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Port-style Free Trade Zones
(FTZ) based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2019. 3.

조지성 | 김은수 | 이연경 | 김동환 |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조지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김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김동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연구원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연구원
	이연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조지성 연구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일부

연구진	김은수	제6장	일부
	이연경	제3장	제1절
	김동환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
	김엄지	제2장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최윤상	한국식품연구소	박사
	서천우	한국커피협회	전문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단순 보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90% 이상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당초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업종 간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농·축산물 제조·가공 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업 유치를 위한 관세행정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1항에 따르면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는 세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입주가 제

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발생한 관세포탈 위반사례 및 이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한다. 고세율의 대두(기본세율 3%, 양허세율 541%)를 저세율의 볍은 콩(기본세율 45%, 양허세율 59.2%)으로 바뀌서 수입한 사례, 대리석 내부에 고세율의 견고추(기본세율 50%, 양허세율 300%)를 은닉하여 수입한 사례 등 수차례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세당국이 농·축산물 등의 수입(반입) 후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수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나, 특정 관세포탈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후의 모든 사업자가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 자체를 허가하지 않거나 긍정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농·축산물 가공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관세행정(안)을 제시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국내외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조사, 기업수요조사, 이해관계기관 인터뷰 조사, 커피 및 후지에 대한 손모을 표준화 가능성 분석, 식품선택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관련 법·제도 검토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 기금마련, 중장기적으로는 관세청 조직 확대를 통한 관리 시스템 확충, 해양수산부 및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연구는 항만물류연구본부 조지성 전문연구원이 책임을 맡고 동 본부의 김은수 부연구위원, 이연경 부연구위원, 김동환 연구원, 김엄지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식품연구소 최윤상 박사, 한국커피협회 서천우 전문가에게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또한 항만물류연구본부 이성우 본부장께서는 이 연구의 감리를 맡아 적절한 지적과 조언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 주었다. 그 밖에 이 보고서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이 지면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 요약 · i

❖ Executive Summary · ix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 2 장 국내외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 11

제1절 국내 주요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11
1.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11
2.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종 현황	14
3. 농·축산물 가공 관련 수요 조사	17
제2절 해외 주요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28
1. 네덜란드	28

	2. 일본	33
	3. 태국	42
	4. 대만	46

제 3 장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기업 입주 관련 법·제도 및 관련기관 의견 검토 · 53
	제1절 관련 법·제도 검토 53
	1. 자유무역지역법 검토 53
	2. 관세법 검토 60
	3. 대외무역법 검토 78
	4. 관련 법 종합 93
	제2절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사 94
	1.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사 94
	2. 소결 96

제 4 장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99
	제1절 농·축산물 손모율 관리 방안 100
	1. 커피 100
	2. 돼지고기(후지) 103
	3. 소결 106
	제2절 소비자 인식 조사 107
	1. Food Value 소비자 조사 설계 107
	2. 계량 모델-Random Parameter Logit model 110
	3. Food Value 소비자 조사 분석 결과 112
	4. 소결 115

제 5 장 관세행정 개선(안) 및 입주 선정 절차(안) · 117

제1절 관세행정 개선(안)	117
1.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117
2. 관세행정 개선(안)	119
제2절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126
1.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126
2.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129

제 6 장 정책제언 · 131

❖ 참고문헌 · 137

표 목차

〈표 1-1〉 부가가치 물류활동별 건수	2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표 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13
〈표 2-2〉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13
〈표 2-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현황	14
〈표 2-4〉 공항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현황	15
〈표 2-5〉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16
〈표 2-6〉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	17
〈표 2-7〉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우선순위 응답 결과(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	20
〈표 2-8〉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응답 결과(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23
〈표 2-9〉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우선순위 응답 결과(농·축산물 가공기업) ..	25
〈표 2-10〉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응답 결과(농·축산물 가공기업)	28
〈표 2-11〉 네덜란드 보세창고 종류	29
〈표 2-12〉 네덜란드 가공 면허 종류	29
〈표 2-13〉 네덜란드 면세 혜택 종류	30
〈표 2-14〉 일본 보세지역 종류	34
〈표 2-15〉 일본 보세지역 내 면세 혜택 제도	39
〈표 2-16〉 대만 보세지역 종류 및 면세	46
〈표 2-17〉 사전승인이 필요한 면세제도(대만)	49
〈표 2-18〉 사전승인이 필요한 면세 관련 법 조항(대만)	50
〈표 3-1〉 자유무역지역 지정대상 지역 및 지정기준	54
〈표 3-2〉 농·수·축산물의 입항 후 수입신고 경우	56
〈표 3-3〉 역외작업 내용	57
〈표 3-4〉 외국물품 및 잉여물품 재고 기록 및 반출	58

〈표 3-5〉 잉여물품 기록 및 반출	60
〈표 3-6〉 우리나라 관세율 종류	61
〈표 3-7〉 주요 농·축산물 관세율	62
〈표 3-8〉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제한업종 규정	64
〈표 3-9〉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가공 시 관세청 협의 품목	65
〈표 3-10〉 수출 금지품목	79
〈표 3-11〉 수출 제한품목	80
〈표 3-12〉 수입 제한품목	82
〈표 3-13〉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87
〈표 3-14〉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91
〈표 3-15〉 수입 후 단순가공 제품의 원산지 표시	92
〈표 3-16〉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	92
〈표 4-1〉 로스팅 단계별 생두의 중량감소	101
〈표 4-2〉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돈육의 저장감량 변화	105
〈표 4-3〉 12가지 식품선택가치 정의	107
〈표 4-4〉 응답자 개요	109
〈표 4-5〉 RPL 분석 결과	114
〈표 5-1〉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119
〈표 5-2〉 관세행정 개선 방향 개요	121
〈표 5-3〉 법·제도 개선(안)	124
〈표 5-4〉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128
〈표 5-5〉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13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자유무역지역 현황	12
〈그림 2-2〉 설문조사 개요	18
〈그림 2-3〉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응답 특성	19
〈그림 2-4〉 농·축산물 제조·가공사업 관련 의향 및 수요(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	21
〈그림 2-5〉 농·축산물 가공기업 응답 특성(1)	23
〈그림 2-6〉 농·축산물 가공기업 응답 특성(2)	24
〈그림 2-7〉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사업 관련 의향 및 수요	26
〈그림 2-8〉 카카오 가공품 수출액 변화 추이(2010~2015)	32
〈그림 2-9〉 보세공장의 화물 흐름	36
〈그림 2-10〉 일본 관세과세 선택제	38
〈그림 2-11〉 손모울 산정 방법	41
〈그림 2-12〉 자유무역지역 기본 사업 모델	48
〈그림 3-1〉 고세율 대두를 저세율 볶은 콩으로 대체	77
〈그림 3-2〉 대리석 내 건고추 은닉하여 수입	78
〈그림 3-3〉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기업 입주 관련 법	93
〈그림 4-1〉 커피 추출 4단계	100
〈그림 4-2〉 설문 예시	108
〈그림 5-1〉 물품 신고 절차도	122
〈그림 5-2〉 자유무역지역 반입·반출 신고서(예시)	123

요약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에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기관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농·축산물 제조·가공 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위한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방법

- ▶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2장에서는 국내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체 입주 현황을 조사하고 네덜란드, 일본, 대만, 태국 등의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행정 절차에 대해 검토함

- 3장에서는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체 입주제한에 대한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사하며, 4장에서는 입주제한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함
- 5장은 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개선안 및 입주선정 절차 개선안을 제시함

2) 연구의 특징

-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등을 위한 신선물류 비즈니스 모델 수립, 클러스터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사업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제안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집중하고자 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1) 관세행정 개선(안)

- ▶ 본 연구에서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①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정의하고, ② 품목별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음
- ▶ (기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관련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함

〈표 1〉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구분	정의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②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외반출 되는 경우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내 반입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외반출 되는 경우
입주허용 불가 품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내반입 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제한된 품목

자료: 저자 작성

▶ (관세행정 개선 방향)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별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

〈표 2〉 관세행정 개선 방향 개요

구분	관세행정 개선 방향	대상 품목
개선방향 A	- 국내 농가 보호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운 품목 - 입주 희망 기업이 Biz-model별 수입원재료의 손모을 정도를 제시할 경우 입주 허가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개선방향 B	- 입주 희망 기업이 Biz-model별 수입원재료의 손모을 정도를 제시 - 우리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 계획 제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개선방향 C	입주허용 불가 품목	입주허용 불가 품목

자료: 저자 작성

-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세 행정안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물 관세포탈, 밀수 등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2) 입주선정 절차 개선(안)

- ▶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절차의 개선 또한 필요함
- ▶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따른 두 가지 절차안을 제안함
 -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 절차(안)의 기존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대비 차이점은 ① 기업이 비즈니스모델별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해야 하는 점, ② 심사·평가 전 관세청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제출한 손모율 표준화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 ③ 마지막으로 선정기준에 손모율 표준화 관련 항목이 추가되는 것 등임
 -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의 경우와 유사하나 ① 기업이 우리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한다는 점, ② 선정평가위원에 농림축산 가공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점, ③ 선정기준에 ‘사회적 가치항목’에 우리농가 보호와 같은 항목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세행정 개선안 및 절차안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자격),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제1항,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 관리 상황의 조사) 제4항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

〈표 3〉 법·제도 개선(안)

해당 법률	기존	개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8. 국가기관	〈추가〉 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1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할 경우 사업을 영위할 것 가.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	〈수정 및 추가〉 1. 「관세법」 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률	기존	개선(안)
	입·반출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관세법」 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하관세 규정」 별표1의 나 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가. 제조·가공 후 국내반입(수입)하는 경우 3.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의 별표 3 수입제한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종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손모을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 관리 상황의 조사)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 또는 제38조제1항의 기록된 손모을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이해관계기관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관세행정 개선(안)은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임

EXECUTIVE SUMMARY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Port-style Free Trade Zones (FTZ) based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1. Purpose

- ▶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of customs administration on which all the parties concerned are able to agree for allow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companies to enter into Free Trade Zones (FTZ). Such measures will ultimately vitalize port-style FTZ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 ▶ This study consists of a total of six chapters
 - Chapter 2 investigates the occupancy statu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cessing companies within FTZs in Korea, while

reviewing customs administration procedures within FTZs of the Netherlands, Japan, Taiwan and Thailand.

- Chapter 3 reviews relevant laws and systems, surveying opinions of concerned institutions on occupancy restrictions imposed to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cessing companies within FTZs. Chapter 4 summarizes issues related to occupancy restrictions, while conducting analysis to present solutions (proposal).
-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 5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proposal) for customs administration and as well as measures (proposal) for enhancing occupancy selection procedures.

2) Features

- ▶ Multipl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measures for vitalizing FTZs, establishing a cold chain business model for maximizing the generation of added values and ways to organize clusters etc.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relevant system improvements to materialize the businesses in practice
- Taking one step further from proposing a business model, this study aims to concentrate on reviewing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imitations for realizing the model, and presenting improvements (proposal).

3. Results

1) Summary

(1) Improvements (proposal) of customs administration

- ▶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 measures of customs administration (proposal) by (1) defining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and (2) setting a direction for improvement per items.
- ▶ (Criteria) The study intend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of customs administration which serve the purpose of relevant laws including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the Customs Act,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tc.
- ▶ (Defining the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Subject items a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Table 1〉 Definition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Classification	Definition
The 1st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 Among items corresponds with <u>the Attached Table1-A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tc.</u>, ① <u>those not produced in Korea</u> or ② <u>those taken out to foreign countries</u> after being processed in FTZs
The 2nd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 Among items corresponding with <u>the Attached Table1-A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tc.</u>, ① <u>items entered into the country</u> after being processed in FTZs or

Classification	Definition
The 2nd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 ② among items corresponding with <u>the Attached Table1-B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etc., those taken out to foreign countries</u> after being processed in FTZs
Items restricted from occupancy	• Among items corresponding with <u>the Attached Table1-B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etc.,items entered into the country</u> after being processed in FTZs • <u>Items restricted from importation</u> under the Foreign Trade Act

Data: Written by authors

- ▶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Three improvement directions are suggested per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Table 2〉 Overview of improvement directions for customs administration

Classification	Improvement directions for customs administration	Subject items
Improvement direction A	• Items free from issu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domestic farms etc. • If an enterprise aspiring to move into the FTZ presents the loss rate of imported raw materials per business model, the occupancy is allowed • Sustainabl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utilizing the electronic customs system(UNI-PAS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 The 1st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Improvement direction B	• An enterprise aspiring to move into the FTZ shall present the loss rate of imported raw materials per business model and • Indirect support plan for domestic farms • Sustainabl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utilizing the <u>electronic customs system(UNI-PASS)</u>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 The 2nd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Improvement direction C	• Restricted items	• Restricted items

Data: Written by authors

- ▶ Smooth operation of customs administration measures (proposal) suggested by this study requires a sustainable system to manage and supervise customs portal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the risk of smuggling.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e active utilization of the UNI-PASS run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2) Improvement measures (proposal) of occupancy selection procedures

- ▶ Improving the selection procedures of occupant enterprises in port hinterland complexes is necessary to allow the occupancy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nufacturing companies within Free Trade Zones.
- ▶ Two procedures (proposal) are suggested depending on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 Selection procedure for the 1st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proposal)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selection procedure (proposal) in the following three elements: (a) companies shall include the standardization of loss rate of raw materials into a business proposal per business models, (b) companies shall go through verification process for the standardization of loss rate by tapping into the pools of customs experts prior to evaluation and assessment, and © a category relevant to the standardization of loss rate shall be included to the selection criteria.

- The overall procedures are similar between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businesses using the 2nd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as raw materials and the 1st line of subject items for improving customs administration. However, the differences are as follows; (a) companies shall include indirect support plans for domestic farms into business proposal, (b) the selection assessment board shall include expert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cessing, and (c) the selection criterion shall include an item of ‘protecting domestic farms’ for ‘social value item’.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Based on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procedures presented, this study also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ollowings; article 10 (occupancy requirements)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0 (business type restricted from occupancy) of the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8 (inventory records etc.) paragraph 1 and article 39 (Inspection of inventory management status of occupant enterprises), paragraph 4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Free Trade Zones.

〈Table 3〉 Improvements (proposal) of laws and institutions

Corresponding laws	Existing	Improvement measures (propos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Article 10 (occupancy requirements) ① A person who intends to move into a free trade zone shall meet any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ddition〉 9. A business manufactures and processes products using industrial and fishery products as well as agricultural and live-

Corresponding laws	Existing	Improvement measures (proposal)
ent of Free Trade Zones	1. A person who intends to run a manufacturing business primarily for export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his/her exports, etc.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8. Any national agency	stock products granted with simple concession as raw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Attached Tables 1-A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of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tc. 10. In accordance with the Attached Tables 1-B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of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tc., among businesses which manufacture and process products using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 imposed of the rate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such domestic and foreign prices, business operation is allowed on the followings: A. In the case of moving an item out of the country (export) after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Guideline on the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0 (business type restricted from occupanc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free trade zones is able to restrict the occupancy of a business, provided it falls into any of the following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0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When permitting the occupancy of the type of business relevant to paragraph 1,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ust go through consultation on the matter of moving in and out of goods with the head of customs house in charge of specific region 1. A businesses manufactures and processes products using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 imposed of the rate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such domestic and foreign prices as raw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3 of the	〈Revision and addition〉 1. Among businesses manufacture and process products using agricultural, forest and livestock products imposed of the rate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between such domestic and foreign prices as raw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3 of the Customs Act and the Attached Tables 1-B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of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tc., a business corresponds with the following items; A. In the case of moving an item into the country (import) after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3. A business which manufactures and processes using import limiting products from the 「Public notice of export and import

Corresponding laws	Existing	Improvement measures (proposal)
	Customs Act and the Attached Tables 1-B of the Regulations on Tariff Conce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of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tc., 2. Type of business that causes harm to national health or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or traditional customs and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2018-94)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raw materials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8 (Inventory records etc.) Every occupant enterprise shall record and manage matters such as the names of items, standards, quantities, prices, details of maintenance work, etc. of the following goods, which are necessary to manage their inventory, as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good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ices of which are below the amount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ddition〉 ① Every occupant enterprise shall record and manage matters such as the names of items, standards, quantities, prices, loss rate etc. of the following goods, which are necessary to manage their inventory, as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good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ices of which are below the amount prescribed and pu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9 (Inspection of inventory management status of occupant enterprises) ④ Where the inventory of foreign goods, etc. is found to fall short as a result of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ustoms house shall collect, without delay, customs corresponding to such shortfall from the relevant occupant enterpri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goods, the loss of which is reported pursuant to Article 38(3) are confirmed to be in any free trade zone or goods are destroyed on the grounds of a disaster or other inevitability.	〈Addition〉 ④ Where the inventory of foreign goods, etc. is found to fall short as a result of an inspection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ustoms house shall collect, without delay, customs corresponding to such shortfall from the relevant occupant enterpri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goods, the loss of which is reported pursuant to Article 38 (3) are confirmed to be in any free trade zone or goods are destroyed on the grounds of a disaster or other inevitability or the shortfall falls within the range of loss rate written in article 38 paragraph (1).

Data: Written by authors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The improvement measures of customs administration on which all the concerned institutions are able to agree aims to promote the vitalization of added value of ports and relevant industries. At the same time, such measures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economy based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job creation, trade promotion and smooth opera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allowing the genuine meaning of free trade zones to fulfill and vitaliz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항만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은 「항만법」 제2조(정의)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라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물류기업, 제조기업의 물류, 유통, 제조, 무역활동에 대하여 관세유보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¹⁾ 대부분의 기업이 단순 보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태조사에 응한

1) 김은수 외(2019)에서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158개를 대상으로 2018년 8~9월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91개소(응답률 57.5%)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72개 물류기업의 2017년 매출액 중 부가가치 물류활동²⁾이 차지하는 비중은 37.4%로 하역·운송·보관 60.3%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90%는 분류(51건, 24.3%), 라벨링(48건, 22.9%), 검사(43건, 20.5%), 포장(47건, 22.4%)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전시판매의 경우 단 한 건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수리 2건, 분해 3건, 가공 6건 수준이다(〈표 1-1〉참조)³⁾.

〈표 1-1〉 부가가치 물류활동별 건수(2017년 기준)

구분	조립	가공	분류	라벨링	분해	수리	세척	검사	포장	전시 판매
전체	4	6	51	48	3	2	6	43	47	0
	(1.9%)	(2.9%)	(24.3%)	(22.9%)	(1.4%)	(1.0%)	(2.9%)	(20.5%)	(22.4%)	(0.0%)
부산항	1	0	31	33	1	0	2	25	28	0
	(0.8%)	(0.0%)	(25.6%)	(27.3%)	(0.8%)	(0.0%)	(1.7%)	(20.7%)	(23.1%)	(0.0%)
광양항	0	3	6	5	1	0	0	5	6	0
	(0.0%)	(11.5%)	(23.1%)	(19.2%)	(3.8%)	(0.0%)	(0.0%)	(19.2%)	(23.1%)	(0.0%)
인천항	2	2	11	7	1	1	3	9	10	0
	(4.3%)	(4.3%)	(23.9%)	(15.2%)	(2.2%)	(2.2%)	(6.5%)	(19.6%)	(21.7%)	(0.0%)
평택 당진항	1	1	3	3	0	1	1	4	3	0
	(5.9%)	(5.9%)	(17.6%)	(17.6%)	(0.0%)	(5.9%)	(5.9%)	(23.5%)	(17.6%)	(0.0%)

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에서 수행한 입주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즉 항만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당초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고 부가가치 산업의 유치가 원활하지 않으며 동 업종 간 과다 경쟁 등으로

2) 부가가치 물류활동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고시(2016.12)에 따라 [별표1]에 정의된 '조립, 가공, 분류, 라벨링, 분해, 수리, 세척, 검사, 포장, 전시판매' 등 10가지 활동으로 구분했다.

3) 본 연구는 보관활동 대비 부가가치 물류활동의 비중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주기업 실태 조사 결과 중 제조 기업을 제외한 총 72건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를 〈표 1-1〉로 정리하였다.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김형근 외 2011). 새로운 비즈니스 중 하나로 다수 고려되고 있는 것이 농·축산물 가공업체 및 관련 산업 유치이다(이언경 외, 2016; 이성우 외, 2015). 그러나 농·축산물 가공업체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1항에 따르면 ‘「관세법」 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의 입주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세관의 반대로 현재 입주한 기업은 부재한 실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관세법」 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즉 본 연구에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농·축산물 가공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위한 관세행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 당초 취지에 부합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해관계기관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농·축산물 제조 및 가공 업체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에 대한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법의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관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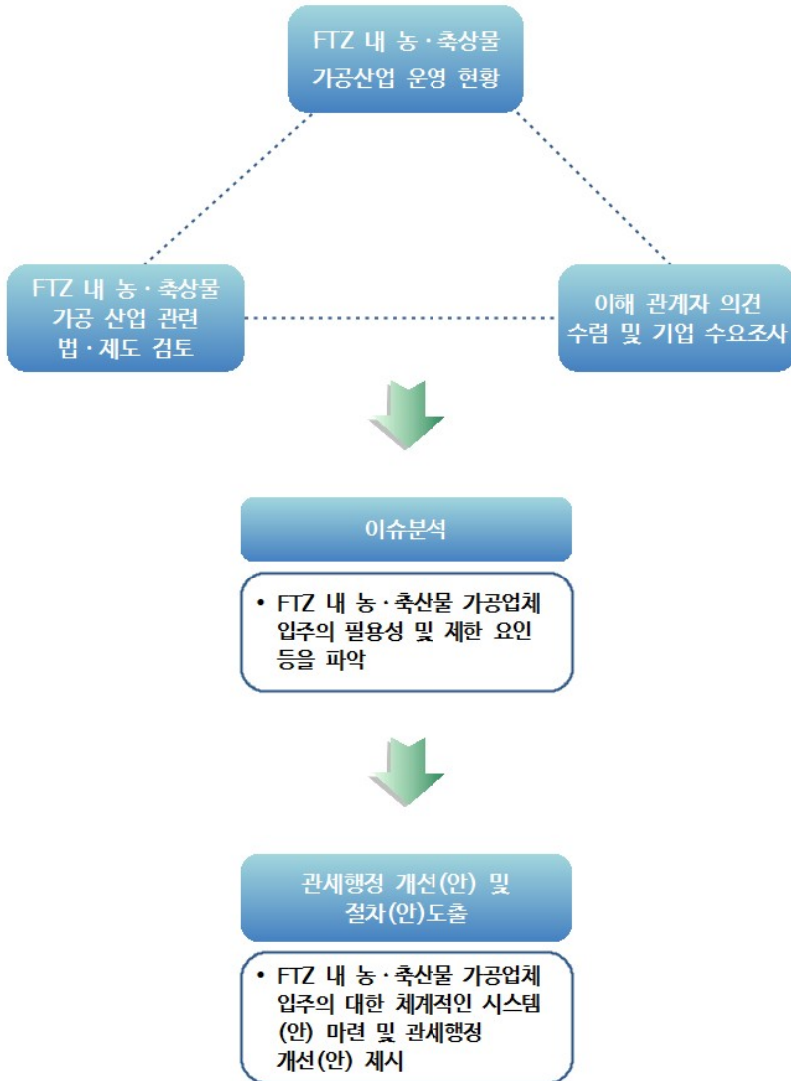
첫째, 국내외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체 입주 현황, 관련 법·제도, 이해관계기관 의견 검토, 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슈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도출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손모을 표준화 가능성 검토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연구의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방법 등 연구 개요에 관한 것이다. 2장에서는 국내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체 입주 현황을 조사하고 네덜란드, 일본 등의 자유무역지역 내 관세행정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체 입주제한에 대한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2장과 3장의 조사·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입주제한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관세행정 개선(안) 및 절차 개선안을 제시하고 6장에서는 개선안을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원재료 중량감소율 표준화를 위한 실험, 소비자 설문조사, 기업수요 설문조사 등이다. 국내외 주요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및 관세행정 절차,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등을 위해 문헌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체 입주제한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 실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입주제한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수행의 전체적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농·축산물 가공산업’,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언경 외(2016)⁴⁾는 온·습도 민감화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물류 프로세스 및 물류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에 유치 가능한 23개 품목(커피/코코아, 냉동소고기, 냉동해산물, 반도체/전자기기, 화장품, 의약품, 와인 등)을 선정하였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커피 및 냉동해산물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및 유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성우 외(2015)⁵⁾에서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내에 콜드체인 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콜드체인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국내 주요 자유무역지역별 15개 비즈니스 모델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형근 외(2011)⁶⁾는 국내외 해운·항만 여건,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제도 검토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 능력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입주업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입주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과 물류업의 ‘총매출액 및 총 거래물량에 대한 완화’ 및 ‘최소투자금액 하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4) 이언경 외(2016).

5) 이성우 외(2015).

6) 김형근 외(2011).

손병석 외(2007)⁷⁾는 인천송도경제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산 식료품의 수입, 보관, 배송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선 물류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중점으로 기술되었으며 사업 구현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무역지역(또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등을 위한 신선물류 비즈니스 모델 수립, 클러스터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사업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제안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온·습도 민감화물 항만 유치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이연경 외 (2016) • 연구목적: 우리나라 항만에 유치 가능한 온·습도 민감화물 발굴 및 유치방안 수립, 제시	• 문헌조사, 해외사례 분석 • O/D분석 • BCG 매트릭스 • AHP 분석, 전문가 면담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방법론	• 온·습도 민감화물 개념 재정의 • 온·습도 민감화물 물류 프로세스 및 물류환경 변화 분석 • 유치 가능 온·습도 민감 화물 23개 품목 선정 • 실현 가능성 높은 커피, 냉동해산물의 비즈니스 모델 및 유치방안 제시
	2 • 과제명: 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허브 구축 및 연계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이성우 외 (2015)	• 문헌조사, 해외사례 분석 • SWOT 분석 •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콜드체인 시장 환경 분석 • 국내 주요 자유무역지역별 15개 Biz Model 제시 (예, 동해자유무역지역의 Biz Model로 수산물 가공 수출 및 원자재 유통 모델 제안)

7) 손병석 외(2007).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연구목적: 우리나라 자유 무역지역 내 콜드체인 산업 허브 구축 및 연계방안 마련		
	3	- 과제명: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김형근 외 (2011) - 연구목적: 우리나라 항만 배후단지의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 능력제고 방안 제시	- 문헌연구, 해외사례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국내외 현지 출장 조사 - 관계자 인터뷰	- 국내외 해운, 항만 여건 - 국내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 -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제도 -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상 문제점 분석 - 항만배후단지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4	- 과제명: 국내 신선물류클러스터의 구축방안-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 연구자(연도): 손병석 외 (2007) - 연구목적: 중국산 식료품의 수입, 보관, 배송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선물류 클러스터 구축 방안 제시	- 문헌조사, 해외사례 분석 - 회귀분석 - 경제성 분석	- 신선물류 시장 현황 및 규모 분석 - 국내 신선물류시장의 문제점 - 신선물류클러스터 정의 재정립 - 신선물류클러스터 경제적 효과 분석 - 신선물류클러스터 구축 관련 법·제도
본 연구		- 기존 연구는 자유무역지역(또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신선물류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행정적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이의 개선안에 집중함	-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이 해관계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농·임·축산물 제조 가공 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필요성을 설명하고, 손모율의 표준화 및 소비자조사를 통한 당위성을 제공하고자 함	-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 자유무역지역 내 농·임·축산물 등의 제조, 가공업 허용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 기업수요 조사, 소비자 조사 - 손모율의 표준화 - 관세행정 개선(안) 제시

제 2 장

국내외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제1절 국내 주요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1.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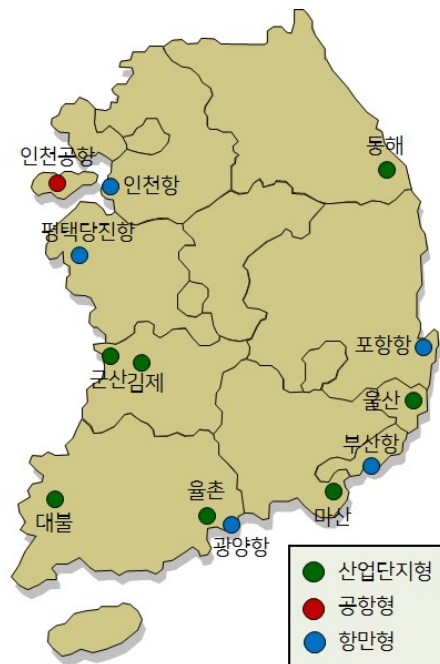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통해 무역의 진흥, 고용 창출,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해 1970년 1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정을 통해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현,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0년 12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2년 1월 ‘관세자유지역’을 설치하였다.⁸⁾

외국으로부터 최초로 반입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가공·조립 등의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 및 통합하였다. 이후 2004년 6월 기존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 자유무역지역 현황



자료: 저자 작성

8) 박재곤 외(2015), p. 4.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하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수출 증대, 고용창출 등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총 7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7개 자유무역지역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지정일	1970.01	2000.10	2002.11	2005.12	2005.12	2008.12	2009.01
총 면적 (천 m ²)	953	1,256	1,158	248	343	1,297	99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검색일: 2018. 12. 05)

공항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무역 및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역내 반입된 물품을 자유롭게 장치·분류·포장·전시 외 단순 가공 및 조립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5개 항만에 지정되어 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감독하며, 5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항만공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지정일	2005.04	2002.01	2002.01	2003.01	2008.12	2009.03
총 면적 (천 m ²)	2,779	9.452	8.879	2.405	709	1.429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자료 활용(검색일: 2018. 12.05)

2.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종 현황

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현황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종을 살펴본 결과 전기, 기계, 금속 관련 제조업의 입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해당 3개 업종은 전체 입주기업의 약 80% 수준에 이르는 등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대부분 기계 및 전기 등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표 2-3〉 참조).

〈표 2-3〉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현황

구분	전기/전자	기계	금속	섬유/화학	기타	농·축산물 가공	합계
마산	25	52	14	2	18	-	111
군산	4	11	7	5	4	-	31
대불	3	13	10	3	2	-	31
동해	3	5	1	2	6	-	17
울촌	1	7	1	2	6	-	17
울산	4	17	13	-	1	-	35
김제	4	2	11	5	6	-	28
합계	44	107	57	19	43	-	2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검색일: 2018. 12. 05)

2)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현황

공항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특정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간 물류·무역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물류기업 및 수출기업 등에 관세부과 유예 및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자유로운 물류활동을 보장함에 따라 대부분 물류기업 중심인 가운데 공항 및 항만에서 화물처리를 위한 터미널 운영사가 입주해있으며, 일부 자유무역지역(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에서는 제조업도 찾아볼 수 있다(〈표 2-4〉 참조).

〈표 2-4〉 공항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 현황

구분	터미널	물류창고업	제조업	기타	농·축산물 가공	합계
부산항	6	61	7	-	-	74
광양항	4	31	7	-	-	42
인천항	4	-	-	-	-	4
포항항	2	3	-	-	-	5
평택당진항	-	13	-	-	-	13
인천공항	7	32	2	-	-	41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자료 활용(검색일: 2018. 12. 05)

3)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 운영 실태

앞서 산업단지형 및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제조업과 물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 관련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표 2-5〉 참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의 제조·가공을 통해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주자격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무역지역 내에는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기업이 전무하며, 이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내 입주제한 업종을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표 2-5〉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자격)

-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8. 국가기관
- ②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제10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표 2-6〉 참조).

예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제조 및 가공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산물은 현재 국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 수산물시장에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콩, 고추, 쌀, 육류 등 농·축산물의 경우

수산물과 달리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후 유통할 경우 국내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무역지역 내 수산물 제조·가공은 어업에 큰 피해가 없고, 국내 수산물 가격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동해자유무역지역은 동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풍부한 어획량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수산물 가공기업이 운영 중이며, 동북아 콜드체인허브 구축을 위한 수산물 가공기업 모집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6〉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3. 농·축산물 가공 관련 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 측면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세 행정 절차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허용에 대한 입주 의향 및 실제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 사항 등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항만형 자유무역지역)과 농·축산물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64개 기업, 42개 기업이 최종 응답하였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농·축산물 가공기업
표 본 수	➡	■ 106개사 106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64개, 농·축산물 가공기업 42개)
조사 방법	➡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	■ 유의 표본 추출
조사 기간	➡	■ 2018년 11월 19일 (월) ~ 2018년 11월 30일 (금)

수요 조사를 위한 설문은 응답기업의 특성, 제도 개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 확장 및 진출 의향,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해당 사업을 위한 추가 요소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관세 혜택, 초기 투자비용, 낮은 임대료,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 신규 화주유치 용이, 운송비 절감 등을 토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자유무역지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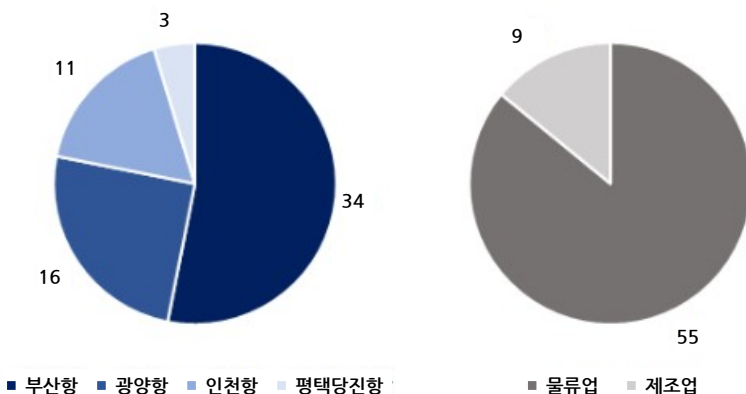
농·축산물 가공 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는 임대면적의 대형화, One Stop Service 제공,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확보, 손모을 표준화 가이드라인 등을 선정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2) 항만배후단지(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대상 수요 분석

(1) 응답기업 특성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에 참여한 기업의 현황을 간략히 파악해보면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34개로 전체 응답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광양항(16개), 인천항(11개), 평택당진항(3개) 순으로 응답하였다. 64개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살펴보면 물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5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은 9개 기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응답 특성



(2)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 개선 기대효과 분석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기대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예상되는 8가지 효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개선의 효과로 가장 기대치가 높은 부분은 관세혜택 및 저렴한 임대료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64개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25개 기업이 관세혜택에 대한 기대효과를 1순위 혹은 2순위로 선정하였다.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기대치도 높게 나타났다으며 23개 기업이 해당 기대효과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였다. 관세혜택과 저렴한 임대료 모두 기업의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7〉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우선순위 응답 결과(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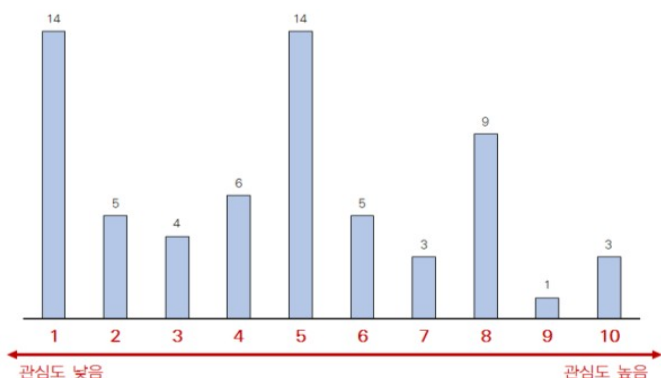
기대효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관세혜택	20	5	4	8	7	6	3	11
낮은 초기 투자비용	6	8	9	8	6	7	13	7
저렴한 임대료	7	16	8	4	8	6	10	5
고부가가치사업 확대	8	4	4	10	8	9	12	9
과다 경쟁 완화	4	5	3	9	9	13	8	13
생산·물류·유통 복합경영	6	10	12	9	12	7	4	4
신규 화주유치 용이	5	7	13	7	7	10	9	6
운송비 절감	8	9	11	9	7	6	5	9

(3)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사업 의향 분석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 개선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의향 및 수요를 조하였다. 총 10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제조·가공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 1, 높으면 10을 기준으로 기업별 의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거나 관심도가 낮은 기업은 약 36%(23개)로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의 관심을 보인 기업은 39%(25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 16개 기업으로 파악되었다.

종합하면 제도개선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 관련 입주기업의 사업 수행의향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항만배후단지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을 통해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확대 및 매출액 증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림 2-4〉 농·축산물 제조·가공사업 관련 의향 및 수요(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4)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사업 확대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

앞서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및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였다. 입주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사업을 수행 및 확대하는 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였다. 사전에 5가지 요인을 선별하였으며, 해당 요인은 임대면적의 대형화, One stop service 제공,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구축, 손모을 표준화 가이드라인, 농·축산물 유치 마케팅 등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기대효과를 조사한 방법과 동일하게 5가지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One stop service 제공 및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응답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One stop service 제공을 1순위 혹은 2순위로 선정한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63%(41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서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31개, 임대면적의 대형화 25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손모을 표준화 가이드라인 및 농·축산물 유치 마케팅 등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은 One stop service 제공 및 화물처리 통계시스템 구축 등 통관, 화물관리 등 운영과 관련된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관련 사업을 유치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편의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반 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 2-8〉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응답 결과(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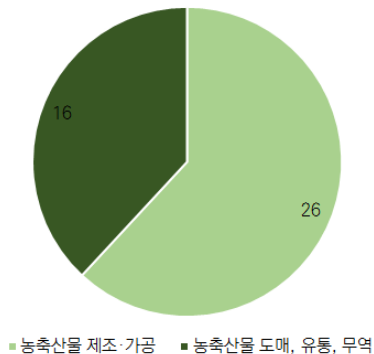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1위	2위	3위	4위	5위
임대면적의 대형화	18	7	11	6	22
One stop service 제공	23	17	14	7	3
화물 입·출고 통제시스템 구축	12	19	17	12	4
손모을 표준화 가이드라인	2	8	11	20	23
농·축산물 유치 마케팅	9	13	11	19	12

3) 농·축산물 가공기업 대상 수요 분석

(1) 응답기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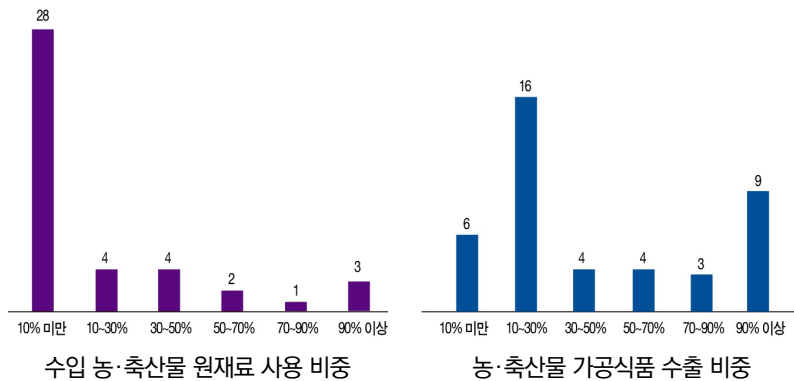
앞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인 농·축산물 제조·가공기업 및 도매·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에 참여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기업 42개 가운데 농·축산물 제조·가공기업이 26개, 농·축산물 도매·유통·무역 관련 기업이 16개로 구성하였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농·축산물 가공기업 응답 특성(1)



42개 응답기업에 대하여 수입 농·축산물 원재료 사용 비중 및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비중에 따른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입 농·축산물 원재료 사용 비중과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비중을 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수입 농·축산물 원재료 사용 비중은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10% 미만 수준으로 수입산 원재료 대신 국내산 원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비중은 10% 미만과 10~30% 구간이 각각 6개, 16개 기업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2-6〉 농·축산물 가공기업 응답 특성(2)



(2)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 개선 기대효과 분석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농·축산물 제조·가공기업의 기대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예상되는 8가지 효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제도 개선의 효과로 가장 기대치가 높은 부분은 관세혜택 및 운송비 절감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2개 가운데

약 64%에 해당하는 27개 기업이 관세혜택에 대한 기대효과를 1순위 혹은 2순위로 선정하였다. 운송비 절감에 대한 기대치도 높게 나타났으며 19개 기업이 관세혜택에 이어서 해당 기대효과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였다.

앞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조사 결과에서는 관세혜택과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농·축산물 가공기업 또한 유사하게 관세혜택과 운송비 절감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순위로 산출되었다. 반대로 신규 화주유치 용이, 과다 경쟁 완화 등에 대한 기대치는 낮게 산출되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응답결과와 대비된다.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관세혜택과 저렴한 임대료, 운송비 모두 비용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설문조사에 응답기업들 대부분 자유무역지역 내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대수준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9〉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우선순위 응답 결과(농·축산물 가공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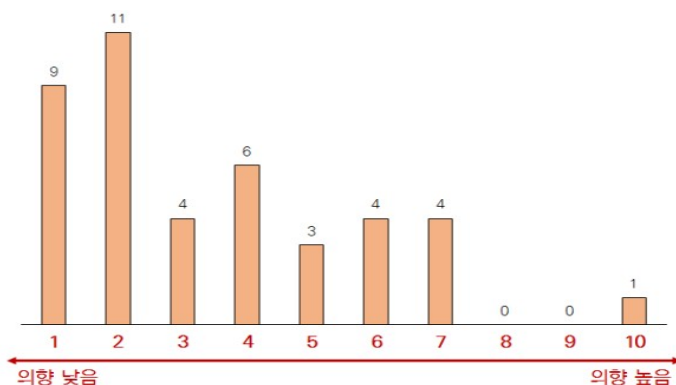
기대효과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관세혜택	20	7	4	4	-	2	2	3
낮은 초기 투자비용	6	9	5	8	-	5	6	3
저렴한 임대료	3	8	15	3	6	2	3	2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	1	3	4	8	6	7	11	2
과다 경쟁 완화	-	2	2	3	10	8	8	9
생산·물류·유통 복합경영	2	4	7	7	7	10	3	2
신규 화주유치 용이	-	-	2	4	11	3	8	14
운송비 절감	10	9	3	5	2	5	1	7

(3)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사업 의향 분석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 개선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농·축산물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의향 및 수요를 조하였다. 총 10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제조·가공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 1, 높으면 10을 기준으로 기업별 의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거나 관심도가 낮은 기업은 약 57% (24개)로 응답기업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의 관심을 보인 기업은 40%(17개), 자유무역지역 입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 1곳으로 파악되었다.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과 관련한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기존의 식품가공기업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식품의 제조·가공 공정의 특성상 많은 인력이 필요한 탓에 도심과 떨어져 위치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9〉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사업 관련 의향 및 수요
(농·축산물 가공기업)



(4)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사업 확대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

앞서 농·축산물 제조·가공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및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한 의향을 파악하였다. 입주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 사업을 수행 및 확대하는 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사전에 5가지 요인을 선별하였으며, 해당 요인은 임대면적의 대형화, One stop service 제공,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구축, 손모울 표준화 가이드라인, 농·축산물 유치 마케팅 등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기대효과를 조사한 방법과 동일하게 5가지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과 동일한 결과로 One stop service 제공 및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응답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One stop service 제공을 1순위 혹은 2순위로 선택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74%(31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서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3개, 임대면적의 대형화 13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손모울 표준화 가이드라인 및 농·축산물 유치 마케팅 등의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은 One stop service 제공 및 화물처리 통계시스템 구축 등 통관, 화물관리 등 운영과 관련된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관련 사업을 유치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편의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반 마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 2-10〉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응답 결과(농·축산물 가공기업)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고려사항	1위	2위	3위	4위	5위
임대면적의 대형화	9	4	6	10	13
One stop service 제공	18	13	3	6	2
화물 입·출고 통계시스템 구축	8	15	11	4	4
손모율 표준화 가이드라인	1	5	13	16	7
농·축산물 유치 마케팅	6	5	9	6	16

제2절 해외 주요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운영 현황

1. 네덜란드⁹⁾

1) 자유무역지역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 장벽 없이 유럽의 허브로서, 한국식 산업단지의 개념은 크게 없으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공단들이 대부분이다. 네덜란드는 투자유치촉진법이나 규정이 없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 단, 네덜란드가 정책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물류서비스, 농업 등 네덜란드 고유의 강점분야에는 부문별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1:1 면담을 통해 각 기업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보세구역을 이용하는 것이다.¹⁰⁾

9) 김종렬 외(2014)

10) 암스테르담 무역관, 「네덜란드 투자인센티브 제도」, pp.8~9

보세구역은 공공보세구역과 민간보세구역으로 총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라벨링, 재포장 등의 단순작업 외에도 ‘역내가공절차’를 통해 가공작업 또한 가능하다(〈표 2-11〉 참조).¹¹⁾ 보세구역의 자율성은 총 5가지 단계로 나뉜다. 공공 보세구역은 소유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공간을 제공,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간 보세구역은 수입업자 개인의 보세구역이다. 민간창고를 운영하거나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지불연기로 비용이 상쇄될 수 있어 현금 흐름 이익을 볼 수 있다 (〈표 2-12〉 참조).¹²⁾

〈표 2-11〉 네덜란드 보세창고 종류

타입	A	B	C	D	E*
구 분	공공 보세구역	민간 보세구역			
자율권의 정도	A → E로 갈수록 자율권이 강화됨				

주: E의 경우 보세구역은 물리적 시설 개념이 아니며, 면허자가 원하는 장소가 보세구역이 됨

자료: 김종렬 외(2014), p. 45

〈표 2-12〉 네덜란드 가공 면허 종류

구분	보세창고	역내가공절차	관세통제하 가공
내용	• 대상제품의 관세코드를 변경시키지 않고 제품을 보존하는 정도인 소량의 제품 가공	•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EU 외로 재수출 목적	•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EU 내로 반입 목적
특성	• 한국의 품질보정과 유사	• 한국의 제조행위와 유사 • 단순 품질보정보다는 복잡한 형태임	• 한국 제조행위와 유사 • 원료 관세가 높고 제품 관세가 낮은 경우 유용한 면허임

자료: 김종렬 외(2014) p.46

11) 김종렬 외,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석유품질·유통 개선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2014. p.45

12)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2010), p. 5

2) 관세행정 및 인센티브제도¹³⁾

기본적으로 EU회원국에는 공통체관세법이 적용되나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편에 속한다. 물품 반입 시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타 유럽 국가로 수출이 가능하며, 보세 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로테르담항의 경우,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또한 네덜란드는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EU지역 외로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역내가공절차’에 따라 수입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납부유예제도와 관세환급제도 등 총 두 가지 방법 중 택할 수 있다. 완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적절한 관세 및 정책조치가 부과된다.¹⁴⁾

〈표 2-13〉 네덜란드 면세 혜택 종류

종류	내용	
역내가공 절차	‘비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에 가공작업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다시 EU역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세 면세 (①납부유예제도하의 역내가공, ②관세환급제도하의 역내가공 중 택 1)
역외가공 절차	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국가에서 EU역외 국가로 이동시킨 후 해당 물품에 대해 가공작업을 가해, 해당 가공품을 다시 EU내에서 자유유통하는 경우	수입세 일부 면세 혹은 완전 면세
관세통제 하 가공	비역내산 물품을 비EU국가에서 EU국가로 들여와, EU내에서 특정 가공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하거나 또 다른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예로, 특정 제품의 원료에 대해 가공된 제품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진 경우, 혹은 안전/위생/환경상의 이유로 특정 가공을 통해 제품의 형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수입세 면세

자료: 국세청(2008), p. 15

13) 김종렬 외(2014) p.45

14) European Commission (검색일: 2019.1.17.)

3) 농·축·수산물 가공무역 모델 예시

네덜란드는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발달시켰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농업시장을 개방했다. 즉, 유럽 물류 중심지라는 입지를 활용해 수입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든 뒤 자국만의 기술력을 활용해 생산한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농업 수출국가로, 2015년 기준 농산물 수출 규모는 약 794억 유로, 2016년 약 836억 유로, 2017년에는 약 881억 유로에 달했다.¹⁵⁾ 2015년을 기준으로 농업 관련 분야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약 530억 유로로 당시 네덜란드 총 GDP의 9% 정도 수준이다.¹⁶⁾

네덜란드는 값싼 미국산 농산물을 사료로 수입해 우유생산비를 낮추고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를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주요 카카오 수입국이지만 코트디부아르 다음으로 세계에서 카카오 가공규모가 많은 국가로서,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재수출하는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4개의 세계적인 카카오 가공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으며,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15%를 가공한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 카카오빈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네덜란드의 카카오빈 수입량은 약 64만 2천 톤에 달했는데 약 30%인 20만 톤을 다시 수출했다. 매년 약 52만 9천 톤의 카카오빈을 가공해 카카오 파우더, 버터, 매스가 생산되는데, 대부분 암스테르담항을 통해 수출된다.¹⁷⁾ 그 이유는 생산지와 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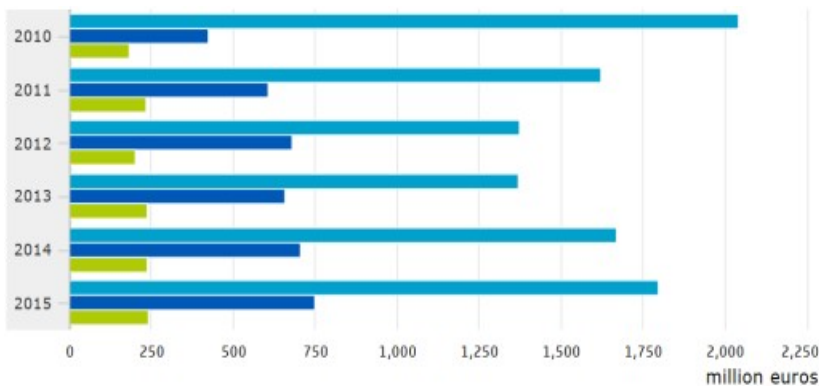
15) STATISTA, 「Total value of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Netherlands from 2015 to 2017」(검색일: 2019.1.17.)

16) 조선일보, 「자원빈국 네덜란드, 경제대국 성장동력은 외국어」(검색일: 2019.1.17.)

17) KOTRA 해외시장뉴스, 「네덜란드, 착한 초코릿의 달콤한 유희」(검색일: 2019.1.17.)

이에 위치해 있는 암스테르담항은 48시간 내 공급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카카오 버터 및 파우더 제품을 제시간에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카오 가공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암스테르담항 주변에 카카오 가공공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저장 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 카카오 무역의 손해 및 보상을 다루는 손해보험회사 등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⁸⁾ 2015년 기준 네덜란드의 카카오 파우더, 버터 등의 단순 가공품(semi-finished product) 매출액은 약 17억 9,800만 유로, 초코렛은 약 7억 5,000만 유로, 기타 카카오 관련 제품 수출액은 약 2억 4,200만 유로에 달했다.¹⁹⁾

〈그림 2-10〉 카카오 가공품 수출액 변화 추이(2010~2015)



자료: CBS(검색일: 2019.1.17.)

18) International Trade Center(2001), p.102

19) CBS, 「Dutch chocolate exports spreading」(검색일: 2019.1.17.)

2. 일본²⁰⁾

1)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²¹⁾ 자유무역지역제도 및 특별자유무역지역제도가 발전적으로 확충되면서 2012년 4월 새롭게 창설된 제도이다. 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제도 및 특별자유무역지역제도는 2011년도에 폐지되었다.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 제도’²²⁾는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서 관세법상의 보세지역제도와 입지기업에 세제·금융상 우대조치를 조합한 제도이다.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 내 ① 보세지역제도와 ②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 등 두 가지 제도가 있으며, 특히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 내에 위치한 보세공장은 이 두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세지역은 무역의 진흥 및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수출입화물을 보세상태로 법규의 감독하에 둬으로써 무역질서 유지와 관세 등 징수를 도모하기 위한 곳을 말한다.²³⁾ 보세지역에는 ① 지정보세지역, ② 보세장치장, ③ 보세공장, ④ 보세전시장, ⑤ 종합보세지역 등 총 5가지가 있다(〈표 2-14〉 참고).²⁴⁾ 보세지역에서는 외국화물 하역, 운반, 장지, 가공 및 제조, 전시 등의 행위가 가능하지만, 관세징수 확보 및 단속을 적절히 하기 위해 보세지역에 있는 외국화물은 세관의 감독 하에 처리된다.

20) 일본 세관 홈페이지 보세지역 페이지, 「보세지역 종류」, 오키나와지구세관 홈페이지,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 등 자료를 정리해 작성

21) 오키나와지구세관 홈페이지,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검색일: 2019.1.17.)

22) 일본 세관 홈페이지 보세지역 페이지,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검색일: 2019.1.17.)

23) 정재호·강성훈,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117

24) 일본 세관 홈페이지, 「보세지역」(검색일: 2019. 1. 17).

〈표 2-14〉 일본 보세지역 종류

종류	주요 기능	장치 기간	설치 수속
지정보세지역 (관세법 제 37조)	외국화물 하역, 운반, 일시장치 예) 컨테이너야드 등	1개월	재무장관 지정
보세장치장 (관세법 제 42조)	외국화물 하역, 운반, 장치 예) 창고, 우와야 ²⁵⁾ 등	2년 (연장가능)	세관장 허가
보세공장 (관세법 제 56조)	외국화물 가공, 제조 예) 조선소, 제철소, 정유소 등	2년 (연장가능)	세관장 허가
보세전시장 (관세법 제 62조 2)	외국화물 전시·사용 예) 박람회, 박물관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세관장 허가
종합보세지역 (관세법 제 62조 8)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의 종합적 기능 예) 중부국제공항 등	2년 (연장가능)	세관장 허가

자료: 일본 세관 홈페이지 보세지역 페이지, 「보세지역 종류」(검색일: 2019.1.17)

(1) 지정보세지역

지정보세지역은 국가나 도도부현, 시와 같은 지방공공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공공시설을 재무장관이 지정된 구역이다. 관세 수속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서, 수입 수속을 하지 않은 화물, 수출 허가를 받은 화물, 일본을 통과하는 화물(가지를 합쳐서 이하 외국화물이라고 표기)을 하역, 운반 또는 일시적(원칙으로는 1개월)으로 장치할 수 있다.

지정보세지역은 본래 화물의 세관 수속과 화물의 처리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화물을 놓아두거나 지정업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지역 내에서는 복잡한 가공이나 제조를 거쳐 화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과 같은 활동은 할 수 없다. 지정보세지역은

25) 세관 구내에서 양륙한 뱃짐을 넣어 두는 창고.

세관 수속을 위해 화물을 놓아두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주로 세관소재지 근처에 설치되어 있다.

(2) 보세장치장

보세장치장은 외국 화물을 놓아둘 수 있는 장소로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말한다. 보세장치장은 교역의 원활화와 중계 무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역임에 따라 외국화물을 관세나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관(장치), 내용 점검, 개조, 분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경기에 따라 수출(환송)이나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화물을 하역 또는 장치(원칙으로 2년, 연장 가능)할 수 있으며,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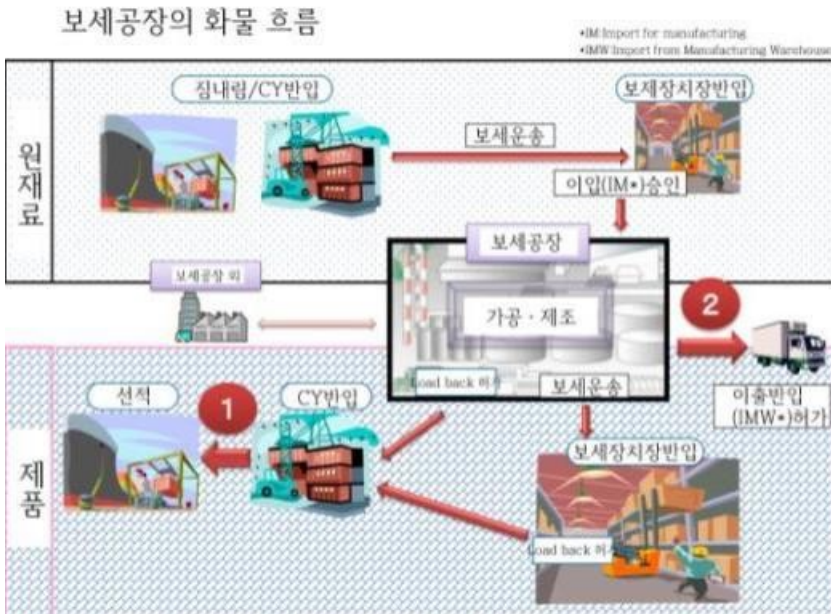
(3)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외국화물에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채로 가공, 제조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이다. 보세공장에서는 외국화물로 분류되는 부품·원자재를 가공·제조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외국에 수출(환송)하는 경우 관세나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공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가공 혹은 제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작업사정에 따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은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 중에 외국화물을 가공, 제조하여 제품을 외국에 수출해야한다. 보세공장은 보통 외국산원료 수입이나 제품 수출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지만 국내 판매품과 함께 수출품의 가공이나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국내 판매를 위한 공장 입지조건에 좌우되어 항구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세공장에서 주로 가공, 제조하는 제품은 어패류 통조림, 과자, 강재, 전선, 선박, 자동차, 정밀기계, 토목기계, 공작기계, 석유제품, 섬유, 농약, 화학제품, 필름 등이 있다.

보세공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세장치장의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사용된 원료제품의 제조 수출 등 기타 보세작업의 성격을 감안해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공장을 지정해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보세공장에서의 보세작업이 허용된 특정 제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보세작업 시작 및 종료에 대한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제품과 원재료의 수량 등 기타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그림 2-11〉 보세공장의 화물 흐름



자료: 오사카세관 감시부 보세총괄부문, 『보세지역제도』, 2016., p.22 를 번역.

(4)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은 국제적인 규모로 시행되는 박람회나 공적기관이 시행하는 외국상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화물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간단한 수속을 거친 후에 전시하는 장소이다.

(5) 종합보세지역

종합보세지역은 상기의 (2)부터 (4)까지의 보세지역이 갖고 있는 외국화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외국화물의 전시 또는 이와 관련된 사용을 포함해 각종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으로 세관장이 허가하여 만드는 곳이다. 종합보세지역은 수입 촉진과 대내 투자 사업의 원활화 등을 위해 창설되었다. 종합보세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각종 시설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지역 내의 각종 시설 간에는 수속 없이 외국화물의 이동이 가능한 등 수속이 간소화되어 있다.

2) 관세행정 및 인센티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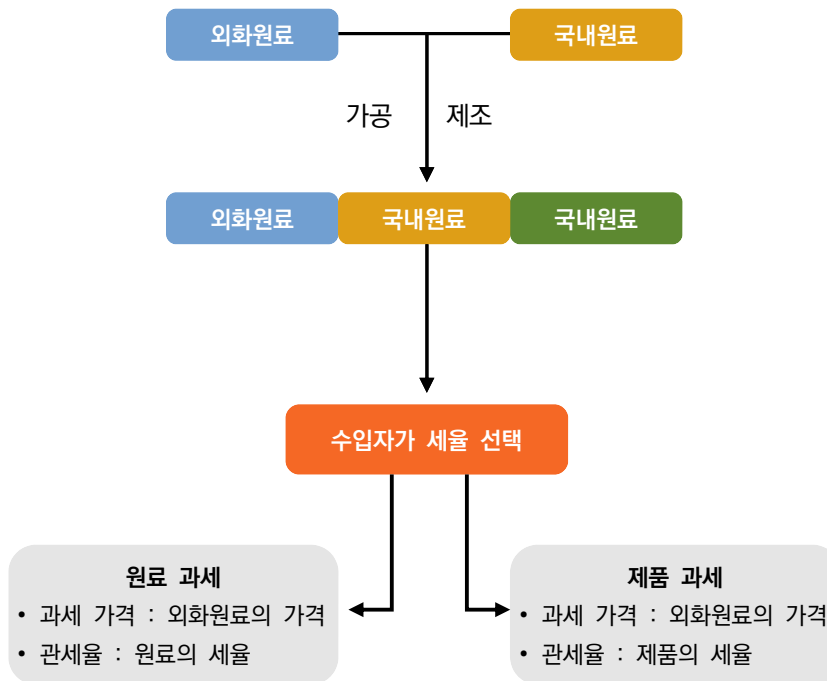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 입주기업은 국세·관세·지방세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인재확보·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특정 기계 등 수리업, 포장업, 특정 무점포 소매업, 창고업, 항공기 정비업, 도로 화물운송업, 특정 부동산 임대업, 도매업 등이다.

관세 부과방법으로 ① 종가세, ② 종량세, ③ 복합세, ④ 선택세 등이 있으며,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 적용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선택세는 동일한 물품에 종가세와 종량세 중 세액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보세지역 내 면세 혜택 종류로는 크게 국세, 관세,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의 경우, 법인과세소득의 40% 공제, 지방세는 법인사업세의 일부 면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세는 ① 관세과세 선택제도(〈그림 2-10〉 참고), ② 보세지역 허가 수수료 경감으로 총 두 가지 제도가 있다(〈표 2-15〉 참고).

〈그림 2-12〉 일본 관세과세 선택제



자료: Uruma City Official Web Site(검색일: 2019.1.17.)자료를 번역.

〈표 2-15〉 일본 보세지역 내 면세 혜택 제도

	인센티브	세부내용	대상업종
국 세 *	① 소득공제	물류거점 내에 새로 설립된 상시로 사용하는 종업원 수 15명 이상의 법인 신설 후 10년간 법인세과세소득의 40%가 공제됨(법인사업세, 법인주민세도 같음) ※ 내각총리대사 등의 사업인정 및 오키나와현지사의 특별사업인정이 필요함	제조업, 포장업, 창고업, 특정 기계 등 수리업, 소매업, 항공 정비업
	② 투자세액공제	대상지역 내에서 대상 업종용으로 제공하는 일정 가격(기계 및 장치 100만 엔, 건물 및 부속설비 1000만 엔)을 넘는 설비를 신설 혹은 증설한 경우, 그 설비의 취득가격의 일정비율이 법인세액에서 공제됨 ※ 공제율: 기계 및 장치 15%, 건물 및 부속설비 8% (법인세액의 20% 한정, 이월 4년, 취득가격 상한 20억 엔)	
	③ 특별상각	대상지역 내에 대상 업종용으로 제공하는 일정가격(기계 및 장치 100만 엔, 건물 및 부속설비 1000만 엔**)을 넘는 설비를 신설 혹은 증설한 경우 특별상각이 인정됨 ※ 상각율: 기계 및 장치 50%, 건물 및 부속설비 25%	
관 세	관세 과세 선택제	보세공장 등에서 외국화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혹은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부과되는 관세를 특정품목을 제외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와 제품에 대한 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제조업, 포장업, 창고업, 도로 화물 운송업, 도매업, 특정 기계 등 수리업, 특정 무점포 소매업, 특정 부동산 임대업, 항공기계 정비사업
	보세지역 허가 수수료 경감	보세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및 종합보세지역에 관한 허가수수가 반감됨	
지 방 세	법인사업세	대상지역 내에 대상 업종용으로 제공하는 일정가격(기계 및 장치 1000만 엔, 건물 및 부속설비 1000만 엔)을 넘는 설비를 신설 혹은 증설한 경우 법인사업세를 일부 과세면제(5년간)	
	부동산 취득세***	대상지역 내에 대상 업종용으로 제공하는 일정가격(기계 및 장치 1000만 엔, 건물 및 부속설비 1000만 엔)을 넘는 설비를 신설 혹은 증설한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일부 과세면제	
	고정자산세	대상지역 내에 대상 업종용으로 제공하는 일정가격(기계 및 장치 1000만 엔, 건물 및 부속설비 1000만 엔)을 넘는 설비를 신설 혹은 증설한 경우 각 시정촌의 조례에 의거하여 고정자산세를 일부 과세면제(5년간)	

	인센티브	세부내용	대상업종
	사업소세	나하시에서 대상 업종용으로 제공하는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격 합이 1000만 엔 이상, 건물 등의 취득가격의 합이 1억 엔 이상의 신설을 한 경우 사업소세 중 자산비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의 바닥면적을 절반으로 계산(5년간)	

주: * ①②③중에서 선택

** 건물부속설비는 건물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도 대상이 됨

*** 토지에 관해서는 취득(구입) 후 1년 이내에 건물 건축에 착수한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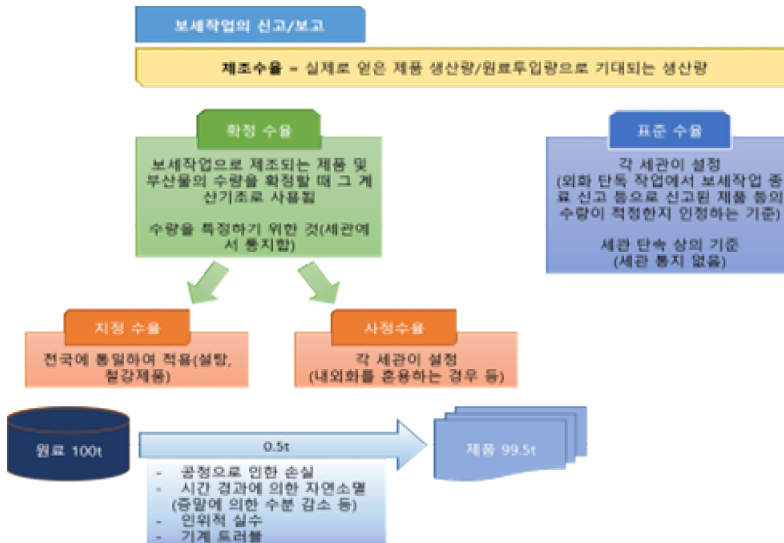
자료: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홈페이지, 「일본 과세 선택제」(검색일: 2019.1.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관세의 감면제도로는 ①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와 ② 잠정조치법상 감면제도가 있다. 관세정률법상 감면제도는 변질, 손상 등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출된 화물의 감세,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 등 여러 가지 특정 상황을 고려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제조용 원료의 감면(법 제13조, 령 제6조, 제13조)에 따르면, 수수, 옥수수, 호밀, 바나나 분말, 설탕 등 곡물사료와 땅콩기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땅콩 등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어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관세액을 감면한다. 제조공장의 위치, 구조, 승인기간, 경감대상 원료명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수출 면세(법 제17조, 령 제31조, 제39조)에 따르면,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특정물품과 기간을 지정해 관세를 면제한다. 1년 이내 수출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거나 면세허가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 면제 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주요 대상물품으로는 조각, 채색 또는 인쇄, 금속을 도금하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 수출 물품의 포장용 물품, 추가 가공이 필요한 모피 및 모피 제품 등으로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다.²⁶⁾ 잠정조치법상 감면제도는 항공기, 인공위성 등과 관련된 부품 및 제품에 대한 감세이다.

가공 및 제도가 가능한 원료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직접 원료 및 작업 공정 중주원료에 직접 섞이거나 혹은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모적 보조원료(조제, 환원제, 용제 등)로 그 소비량이 확실히 파악되는 것에 한한다.

보세공장에서의 손모율은 <그림 2-11>과 같다. 세관장이 사용원료품의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는 것, 기타 보세작업의 성질,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보세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제품 및 그 원료품인 외국화물을 특정하여 지정한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제58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보세작업의 개시 및 종료 시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²⁷⁾ 확정수율은 가공품 및 부산물의 수량을 확정할 때 계산기초로 사용되며, 표준수율은 각 세관이 설정하는 기준이다.

<그림 2-14> 손모율 산정 방법



자료: 오사카세관 감사부(2016) p.13 자료를 번역.

26) 세법연구센터(2014), pp. 81~83.

27) 관세법 제 61조 2 - 지정보세공장의 간이수속.

3) 농·축·수산물 가공무역 모델 예시

〈표 2-15〉의 대상 업종에 표기되어 있는 9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세금우대혜택을 제공하지만, 농·축산물 및 수산물 제조업체를 포함해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입주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기본적으로 ‘국제물류거점 산업집적지역’에서는 【원재료 수입 → 거점 내 공장에서 가공 및 제조 → 생산품 수출】이 기본 사업모델이나, 실행하지 않는 기업도 다수 존재한다. 혜택 대상 기업들 중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업을 하는 기업들(빵 통조림이나 햄, 과자 등)이 입주해 있다.²⁸⁾ 구체적인 예시로, ① (주)aascatering - 기내식 제조 - 소고기, 치즈, 푸아그라 통조림, ② marinfood(주) 본사공장 - 버터 가공 - 버터, ③ (주)아이스식품 - 매실장아찌 가공 - 소금 절임 반 건조 매실, ④ (주)우케 - 무균쌀밥 제조 - 정미(태국 쌀) 사업 모델을 들 수 있다.

3. 태국²⁹⁾

1) 자유무역지역

(1) 보세창고

수입 시 수입물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입 물품의 장치 목적에 따라 8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제조용, ② 선박 수리 또는 건조용, ③ 일반 보관용, ④ 전시 또는 시연용, ⑤ 원유저장용, ⑥ 면세판매장, ⑦ 자유무역지역 안의 보세구역,

28) 인터뷰 자료: 오키나와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추진(2018.12.16., 일본 오키나와).

29)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태국』(세법연구센터), 유영한, 『태국 세관통관 주요 환경』 등 자료를 토대로 작성.

⑧ 면세물품 장치장 등이 있다. 제조 및 가공이 가능한 보세창고는 제조용 보세창고와 자유무역지역 안의 보세구역이다. 재수출을 목적으로 보세창고에 보관된 수입물품은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거나 다른 상품으로 제조, 혼합 또는 조립되는 것과 상관없이 수출입관세 및 기타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³⁰⁾

제조용 보세창고에 반입 및 보관되고 있는 재료가 수입된 상태거나 제조, 혼합, 조립 등의 작업을 거친 후 수출된 경우에 수입관세와 기타 세금납부가 면제된다. 즉, 제조용 보세창고 운영업자는 수출을 위한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최소 100만 바트의 자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제조기술과 노동력을 갖추고 설립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관세 또는 기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세창고의 위치, 재무관리시스템 등 기타 요건들은 관세법에 따르며, 보세창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담보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별로 잔존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의 10%(100만 바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보증서로 예치해야 한다. 매년 허가수수료 1만 바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³¹⁾

자유무역지역 안의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사용 권한을 승인받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면제받아 보관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만 제조, 거래, 유통, 포장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2) 자유무역지역

수출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해 산업 및 산업적 활동 등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30) 유영한, 『태국 세관통관 주요 환경』, 주 태국 대사관, 2013. p.7

31) 세법연구센터(2011), p.80

역내 제조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³²⁾ 수출품 제조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원재료는 품질, 표준 규격, 마크 부착 등에 대한 관리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부산물 및 생산손실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단, 역내 제조된 물품이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한다.

(3) I-EA-T 자유지역

태국의 산업공단법에 의해 경제활동, 국가안보 및 공공안위, 환경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자유지역으로 역내로 반입되는 수출용 제품 제조용 또는 상업적 목적의 원자재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또한, 반입된 물품을 수출할 시 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가 면제되며, 역외(태국 국내)로 판매될 경우,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과세를 과세한다. 대표적인 수출물품은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자동차이다.

2) 관세행정 및 인센티브 제도

관세법 제19조항에 따라 수입물품이 수출품의 제조, 혼합, 조립 또는 포장에 사용되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준다.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1년 내 수출이 지연된 경우 세관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관세환급의 신청은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행기간, 수출장소, 환급 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시 물품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³³⁾ 또한 수출물품에 사용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원자재를 환급대상으로 인정하며, 제조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었으나, 육안으로

32) 유영한(2013), p.9

33)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태국 세관통관 관련 법 조항」(검색일: 2018.12. 25.)

식별이 불가능한 물품 또한 환급 대상이다.

제품의 수출은 환급 계획에 의해 지정된 항구 또는 장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물품을 수출하기 전 수입자는 제조방법, 표준공식, 이미 승인받은 다른 사람의 제조방법 또는 이미 승인된 제조방법의 수정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³⁴⁾ 단, 물품 1단위에 원재료 1단위만 사용되거나, 사용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조방법 승인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조방법은 완성된 물품의 1단위 별로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나타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는 수출 전 1년 동안 관세 부과 없이 보세공장에서 추가로 보관할 수 있다.

가공 후 소요량 산정기준의 경우, 정상공손을 소요량에 포함한다. 즉,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자체 신고를 하는 방식이며, 세관이 사후 심사 관리를 한다. 다만, 세관은 필요시 샘플 선별 또는 현지 출장해 수작업으로 제품별 원자재 소요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확인 지연 등으로 환급 결정이 지연될 때가 있다.³⁵⁾

3) 농·축·수산물 가공무역 모델 예시

태국은 현재 식품 수출액 아세안 국가 중 1위, 전 세계 12위 국가이다.³⁶⁾ 매년 평균 100억 달러의 가공식품을 수출 중이며, GDP의 28.3%를 차지한 기록도 있다. 최근 집계된 수치에 따르면 1만 개 이상의 식품가공 업체가 존재하며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34) 세법연구센터(2011), p. 83.

35) [Customs Department Notification No.66/2551] The normal spoilage must be included in the production formula which is submitted to the Customs Department. (d) a claim for drawback must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re-exportation of the goods.

3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태국의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산업』, 지구촌 리포트 44호 자료를 요약

된다. 태국의 식품가공은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며 생산량의 50% 이상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³⁷⁾ 또한, 태국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의 원료 80%가 수입산이다. 태국은 수입원료를 가공 후 재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어의 종주국인 노르웨이로부터 연어를 수입해 가공하고 자체 브랜드를 육성해 일본으로 재수출하고 있으며, 통조림 참치 또한 수입원료를 활용한 태국의 대표적인 수산 가공식품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김 원초를 수입하여 다양한 김 스낵을 제조, 재수출하고 있다.³⁸⁾

4. 대만³⁹⁾

1) 자유무역지역

대만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구역은 가공수출단지, 자유무역공·항만, 보세창고·공장, 물류센터 등이 있다. 그 중 제조 및 가공활동이 가능한 구역은 가공수출단지, 자유무역공·항만, 보세공장이다.

〈표 2-16〉 대만 보세지역 종류 및 면세

분류	해외로부터 수입한 원료	해외로부터 수입한 연료/반제품/기계설비	대만 내 과세지역으로부터 구입한 원료/연료/반제품/기계설비
가공수출단지	면세 (수입관세/물품세/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관세/물품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0%
과학공업단지			
농업생명공학단지			
보세공장		-	

3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6

3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19

39) 세법연구센터(2013)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분류	해외로부터 수입한 원료	해외로부터 수입한 연료/반제품/기계설비	대만 내 과세지역으로부터 구입한 원료/연료/반제품/기계설비
보세창고		면세 (수입관세/물품세/ 부가가치세)	
물류센터			
자유무역항	면세 (수입관세/물품세/ 담배·주류세/담배 제품 건강복지 기부금/ 무역진흥 서비스비/ 항만서비스비)	면세 (수입관세/물품세/ 부가가치세/ 무역진흥 서비스비/ 항만서비스비)	

자료: 김태인(2006), pp. 1~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가공수출단지

가공수출단지⁴⁰⁾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대만 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에 따라 1966년 설립되었다.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생산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업 및 국제무역업으로 기능을 확대했고, 1997년 이후부터는 물류업 및 기타 관련 산업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가공구 성격을 유지하면서, 무역, 정보, 물류, 유통, 전시 등 비즈니스 서비스 기능을 강화시켰다. 가공수출 단지는 대만경제부에서 관할하며, 총 10개의 가공수출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매월 영업액, 고용인원, 토지사용현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가공수출단지 관리처(EPZA)가 불시에 입주기업들을 시찰하여 점검한다.

(2) 보세공장

제59조에 따르면, 해외판매품의 제조업자는 세관의 등기비준을 거

40) 송주미(2015), p. 85.

쳐 세관이 관리하는 보세창고로 할 수 있으며, 그 수입원료를 보세공장에 저장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해외판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 및 관세가 면제된 원료는 세관의 비준을 거쳐 화물 출고 형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한다.⁴¹⁾

(3) 자유무역공·항만

자유무역공·항만은 2003년 이후 지정된 곳으로 공·항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만 교통통신부가 관할한다. 제도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도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공수출단지에 비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물류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⁴²⁾ 즉, 자유무역항을 통해 수입된 원재료로 보세공장, 가공수출단지 등에서 조립, 반가공, 가공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자유무역지역항을 통해 재수출하는 사업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⁴³⁾

〈그림 2-15〉 자유무역지역 기본 사업 모델



자료: Taiwan International Port, 「Taiwan Free Economic Pilot Zone Promotion&Development」
(검색일: 2018.12.24.)

41) Societe Generale(검색일: 2018.12.13.)

42) 송주미(2013), p. 29.

43) 송주미(2015), p. 80.

2) 관세행정 및 인센티브 제도

대만의 관세 감면제도는 대만관세법 제49조부터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관의 사전승인 필요여부를 기준으로 특정면세와 세관승인면세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특정 재수입 및 재수출 관련 면세제도는 세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세법 제56조에 따르면,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아 재수출해야한다(〈표 2-17〉 참고).⁴⁴⁾

〈표 2-17〉 사전승인이 필요한 면세제도(대만)

감면 조건	감면종류	상세내용	근거규정
사전승인 필요	원재료 재수출 면세	원재료를 수입해 동 원재료를 가공 후 다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단, 동 원료를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아 재수출해야함	관세법 제56조
	수출물품의 재수입 면세	대만에서 수출한 화물이 하자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단, 동 물품이 대만에서 수출된 이후 3년 이내로 재수입되어야 함	관세법 제57조

자료: 김태인(2006) p.1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만의 환급제도는 수출품 제조용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 시 관세를 징수했다가 가공제조 물품을 수출 시 수출자에게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환급에는 관세 납부 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주는 환불과 계좌를 상계처리하는 충세제도가 있다. 충세제도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기반으로 원재료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금융계좌를 통해 징수하는 제도이다.⁴⁵⁾ 동 제도는 수출 제조업자로 하여금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해야하는 관세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준다.⁴⁶⁾ 관세환급은

44) 세법연구센터(2013), p. 35

45) 김용태(2014), p. 16.

수출품에 대한 원재료 소비율, 환급 금액 등의 기준으로 결정된다
(〈표 2-18〉 참고).⁴⁷⁾

〈표 2-18〉 사전승인이 필요한 면세 관련 법 조항(대만)

		내용
면세	관세법 제55조	관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수입화물은 양도 또는 용도를 변경할 시 원수입 시의 납세 의무인 또는 현물 소유인이 양도 또는 용도 변경일 익일부터 30 일 이내에 원수입지 세관에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한다. 다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금의 추가 납부를 면제한다. 1. 양도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이미 재정부의 규정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세관의 비준을 거쳐 원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3. 원동의 또는 증명문서를 발급한 기관이 세관의 조사를 거쳐 원화물을 재수출하도록 결정한 경우 4. 양도와 감세를 감세 및 면세하는 조건을 구비한 경우. 분할납부 또는 세금이 이미 기장된 수입화물은 관세를 정산하기 전에 강제집행 또는 세관의 전문적인 안전에 대한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전문적인 안전으로 비준하는 경우 수양인이 계속 분할납부 또는 기장하도록 준한다.
	관세법 제56조	수입하여 가공하고 해외판매에 제공하는 원료는 동 원료의 수입통관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전항의 재수출하는 원료의 면세수속은 수출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처리해야 한다.
보세	관세법 제59조	해외판매품의 제조업자는 세관의 등기 비준을 거쳐 세관의 관리하는 보세 창고로 할 수 있으며 그 수입원료를 보세공장에 저장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을 해외판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제품 및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 원료는 세관의 비준을 거쳐 화물 출고 형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세공장업자는 소재지 세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 구비해야 하는 자격, 조건, 최저자본금, 신청절차, 설비의 설치, 등기와 변경, 허가증 신청, 재발급, 보세물품의 가공, 관리, 통관, 제품의 국내 판매에 있어 세금의 추가 납부절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46) 김동엽(2003), p. 30.

47) 김용태(2014), p. 16.

		내용
보세	관세법 제60조	보세화물의 저장, 중계운송 및 배송 업무를 경영하는 보세창고업자는 세관에 물류센터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입고되어 저장되는 물류센터의 화물은 전항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조정 및 간단한 가공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화물을 물류센터에 저장하고 원화물의 수출 또는 재조정 및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 국내의 화물저장물류센터가 이미 세금환급의 취소를 공고한 항목을 제외하고 수출 후 제 6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
환급	관세법 제63조	(…) 환급해야하는 원료의 수입관세는 생산업자가 동 원료의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수출 증빙 서류를 첨부 해야하며, 기한이 초과되면 처리하지 아니한다. (…) 해외 판매품의 원료 관세에 대한 환급은 관련 원료 환급표준규정 , 원료관세 환급의 계산, 환급 신청의 수속, 기한, 보증의 제공 등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재정부가 정한다.

자료: Societe Generale, 「Taiwan: Regulations and customs」(검색일: 2018.12.13.)

표준소요량 기준의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개별 수출품의 투입 산출구조를 기준으로 표준 소요량을 산정한다.⁴⁸⁾ 즉, 제조된 수출물품의 품질에 대해 유관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에서 발생한 정상 공손은 소요량에 포함시킬 수 있다.⁴⁹⁾ 보세공장은 신제품 제조 후 한 달 내로 제품수출 전에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표에는 제품코드번호, 명칭, 규격 또는 수량을 기재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의 코드번호, 명칭, 규격 또는 모델명, 단위, 소요수량 등 항목을 제조절차설명서와 함께 관할세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는 관할세관에서 전자매체로 보존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세관은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원래 제출한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에 변동이 있는 경우,

48) World Bank(2006), p.112.

49) Regulation Governing the Offsetting or Refund of Duties and Taxes on Raw Materials for Export Products] For the purpose of duty drawback for materials of certain parts, a “standard for the quantity of materials used for manufacture of finished products” should be applied, which should be established by export enterprise and approved by Ministry of Finance. Such Standard, in general, ha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normal spoilage during the manufacture process.

입주기업은 새로운 명세표를 작성하여 관할세관에 심사를 신청한다. 제품단위소요량명세표의 적용기한은 관할세관의 승인일부터 3년이며, 기한 만료 전에 보세공장에서 다시 신청하여 심사 결정한다.⁵⁰⁾

3) 농·축수산물 가공무역 모델 예시

2002년 WTO 가입과 함께 2003년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대만은 농산물 자체생산량은 감소했지만, 수입농산품을 수입해 가공과정을 거쳐 아세안을 포함한 개도국으로 재수출했기 때문에 가공무역이 오히려 활발해졌다.

예를 들어, 대만은 대두유 및 땅콩을 수입해 땅콩가루로 가공하여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에 수출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용 음료를 대만에서 보틀링해 재수출하는 방식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예시로 대표적이다.⁵¹⁾ 또한, 한국산 김을 수입 후 가공해 김 제과제품을 수출하거나, 한국산 배추를 수입 및 가공하여 김치를 근방 지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⁵²⁾ 다만, 쌀과 같은 식량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농산품이나 저가의 중국산 농산품이 대만 내 유통되어 자국 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에 대비하여 개방 수준을 통제하고, 특정 허용 품목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

50) 대만관세청, 「대만의 수출입통관절차」(검색일: 2018.12.22.)

51) 한국농어촌공사(2018), p.10.

5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5), p.9.

제 3 장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기업 입주 관련 법·제도 및 관련기관 의견 검토

제1절 관련 법·제도 검토

자유무역지역(FTZ) 내 농·축산물 가공산업 입주와 관련된 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이 있다.

1. 자유무역지역법 검토

「자유무역지역법(법률 제15575호)」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법이다.

자유무역지역의 관세 관련 가장 큰 특징은 비관세영역인 외국으로 판단하여 반입물품의 관세 면제 및 환급 등의 과세보류 등의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 시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입주업체가 수출을 위해 반입 신고한 내국 물품의 관세 등의 면제 및 환급 등을 실시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대상 지역은 화물 처리능력, 국외 물품의 반출입 용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만족하는 산업단지, 공항, 항만,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이 해당된다.

〈표 3-1〉 자유무역지역 지정대상 지역 및 지정기준

구분	지정 기준
산업단지	•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
공항	• 연간 3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항만	•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 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 연간 1천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외국물품 반출

(1) 수입신고

외국물품의 반출 시 과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지역법」의 제3조 제1항에서 동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외국물품 형태는 원재료 등 원상태 반출과 제조 및 가공 등을 거친 반제품·완제품 반출이 있다. 반출지 기준으로는 비관세 지역인 국외 반출이 있고, 관세를 지불하는 국내 반출로 나누어진다.

동법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 등을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관 관련하여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 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84호)」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의 시기)에 따라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제7조(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의 요건) 제2항에

따르면 가공품으로 수입신고 때와 입항하는 때의 관세율표가 변하거나
과세단위인 수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물품은 입항한 후에 신고해야
한다.

〈표 3-2〉 농·수·축산물의 입항 후 수입신고 경우

구분	지정 기준
입항 전 수입신고	제7조(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의 요건) ①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가능
입항이후 수입신고	- 제7조 제2항 제2호: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제7조 제2항 제3호: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과세물건의 확정	-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 예를 들어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구입한 물품은 명태라 하더라도 처리 가공하여 실제 반입되는 물품이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 등인 경우에는 각각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가 과세물건임

주: 공동어업사업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자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1항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내국물품 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동법 제44조에 따라 수입통관 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입주기업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등을 제외한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2) 역외작업을 위한 반출

역외작업이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 등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외 관세영역에서 가공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장소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⁵³⁾ 외국물품을 다른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등의 역외작업 장소로 이송할 때 보세운송 등의 절차를 거쳐 원자재 등을 반출가능하다.

〈표 3-3〉 역외작업 내용

구분	지정 기준
범위	•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 반출 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반출 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반출 기간	• 원자재: 1년 이내 • 시설재: 3년 이내(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추가적으로 3년 연장)
대상 물품	• 원자재 • 원자재의 제조·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
장소	•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의 수탁업체 공장 또는 그에 부속한 가공장소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2) 외국물품 재고기록

자유무역지역 내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등을 화주 등(화주,

53) 「자유무역지역법」 제34조(역외작업).

반입자, 그 위임을 받은자)의 책임하에 폐기할 수 있고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⁵⁴⁾

세관장은 입주기업체에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에 대해 재고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징수금액이 1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재고 기록은 하지 않는다.⁵⁵⁾

〈표 3-4〉 외국물품 및 잉여물품 재고 기록 및 반출

구분	지정 기준
불량 외국물품 기록·폐기	• 화주 책임·부담하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발생한 부패, 변질된 물품, 유효기간 지난 물품 등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재고를 기록하고 폐기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 잉여물품 기록 및 반출

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가공한 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운반용품 등을 말한다.⁵⁶⁾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 불량·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원재료 공급 보세공장으로 재반출,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 공급 하는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54) 「자유무역지역법 (대통령령 제15575호)」 제38조(재고 기록 등).

55)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642호)」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56)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9호)」 제3조(정의),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제3항 제8호.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⁵⁷⁾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에 따라 생산중단, 제조품목이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는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운영인은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 총량을 기초로 i) 제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ii) 원재료의 품명, 모델·규격, 내·외국물품의 구분, iii) 원재료별 실소요량, iv)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평균 소요량을 기록·관리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 보관(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 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⁵⁸⁾ 또한 운영인은 기록하는 원재료별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재공품, 제품과 잉여물품에 대한 수급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의 형태, 품명·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및 발생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 서식)을 받아야

5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5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원재료 소요량 관리).

한다.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⁵⁹⁾

〈표 3-5〉 잉여물품 기록 및 반출

구분	지정 기준
잉여물품 기록·반출	• 보세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을 기록 반출
원재료 및 손모을 계산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작성 및 보관 - 제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 원재료의 품명, 모델·규격, 내·외국물품의 구분 - 원재료별 실소요량 -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평균 소요량을 기록·관리 •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손모을의 차이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을을 산정

자료: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9호)」 제3, 12, 13, 32조

2. 관세법 검토

1) 관세율 종류

「관세법(법률 제15218호)」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모든 「관세법」 제49조 기준 모든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 특성에 의해 기재된 기본세율과 기본관세율을 잠정적으로 인상, 인하하여 부과하는 잠정세율, 개발도상국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일반특혜과세율 등이 있다.⁶⁰⁾ 국제적으로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정 등에 의해 운영되는

59)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일반양허관세 등이 있다.⁶¹⁾

우리나라는 관세율표에 따르는데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⁶²⁾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1순위이고,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가 2순위,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가 3순위, 최빈특혜관세가 4순위, 잠정관세가 5순위, 기본관세가 6순위이다.⁶³⁾

〈표 3-6〉 우리나라 관세율 종류

구분	관세종류	
국정관세	• 기본관세율 • 잠정관세율 • 일반특혜관세	
	• 탄력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 특별긴급관세 • 조정관세 • 할당관제 • 계절관세 • 편익관세
협정관세	•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양허관세 • WTO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 • 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 • 개발도상국 각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 특정국가와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자료: 정재호·강성훈,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p26.

60) 정재호·강성훈(2017), p. 26.

61) 정재호·강성훈(2017), p. 27.

62)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63)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2016.5., p. 2.

2) 관세율표

(1) 농·축산물 관세율

「관세법」 제50조 관세율표 중 돼지고기, 커피, 고추, 대두 등에 대한 기본세율, 양허기준세율, 양허관세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7〉 주요 농·축산물 관세율

HSK	한 글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기준 세율	2016 양허 관세	시장 접근 세율	최빈 특혜 관세	국제 협력 관세	탄력 관세	개방 구분	개방 연도
0103.91.0000	돼지(기타/중량 50kg 미만)	18	23.7	18	-	-	-	-	-	-
0103.92.0000	돼지(기타/중량 50kg 이상)	18	23.7	18	-	-	-	-	-	-
0203.11.0000	돼지고기(냉장/도체와 이분도체)	22.5	29.6	22.5	-	-	-	-	-	-
0203.12.0000	돼지고기(냉장/냉적다리살·어깨살 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 있는 것)	22.5	29.6	22.5	-	-	-	-	-	-
0203.19.1000	돼지고기(냉장/삼겹살)	22.5	29.6	22.5	-	-	-	-	-	-
0203.19.9000	돼지고기(냉장/기타)	22.5	29.6	22.5	-	-	-	-	-	-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25	37	25	-	-	-	-	BM	97.7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냉적다리살·어깨 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뼈 있는 것)	25	37	25	-	-	-	-	BM	97.7
0203.29.1000	돼지고기(냉동/삼겹살)	25	37	25	-	-	-	-	BM	97.7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	25	37	25	-	-	-	-	BM	97.7
0206.30.0000	돼지 식용설육(신선/냉장)	18	23.7	18	-	-	-	-	-	-
0206.41.0000	돼지 식용설육(간/냉동)	18	23.7	18	-	-	-	-	-	-
0206.49.1000	돼지 식용설육(족/냉동)	18	23.7	18	-	-	-	-	-	-
0206.49.9000	돼지 식용설육(기타/냉동)	18	23.7	18	-	-	-	-	-	-
0209.10.0000	돼지 비계	3	10	6.6	-	0	-	-	-	-
0210.1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냉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뼈 있는 것)	25	37	25	-	-	-	-	BX	97.7
0210.12.0000	돼지고기식용설육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41.4	31.5	-	-	-	-	-	-

H S K	한 글 품 명	기본 세율	양허 기준 세율	2016 양허 관세	시장 접근 세율	최빈 특혜 관세	국제 협력 관세	탄력 관세	개방 구분	개방 연도
0210.19.0000	돼지고기식용살육(기타)	25	37	25	-	-	-	-	BX	97.7
0210.99.1020	돼지(육 또는 식용살육/분조분)	22.5	29.6	22.5	-	-	-	-	-	-
0901.11.0000	커피(볶지 않은 것/ 카페인 미제거)	2	60	54	-	0	-	-	-	-
0901.12.0000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	2	60	54	-	-	-	-	-	-
0901.21.0000	커피(볶음/카페인 미제거)	8	45	29.5	-	-	-	-	-	-
0901.22.0000	커피(볶음/카페인 제거)	8	45	29.5	-	0	-	-	-	-
0901.90.1000	커피의 각과 피	3	60	54	-	0	-	-	-	-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8	45	29.5	-	0	-	-	-	-
0709.60.1000	고추류(단고추/벨타입/ 신선/냉장)	50	300	270	50	-	-	-	BM	95.1
0709.60.9000	고추류(기타/신선/냉장)(캡시컴 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50	300	270	50	-	-	-	BM	95.1
0710.80.7000	고추류(냉동)(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27	30	27	-	-	-	-	-	-
0711.90.5091	고추류의 것(일시저장처리)	30	300	270	50	-	-	-	BM	95.1
0904.21.0000	고추류(건조/미파쇄 및 미분쇄)	50	300	270	50	-	-	-	BM	95.1
0904.22.0000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	50	300	270	50	-	-	-	BM	95.1
1201.10.1000	대두(종자/콩나물용)	3	541	487	5	-	-	-	TC	95.1
1201.10.9000	대두(종자/기타)	3	541	487	5	-	-	-	TC	95.1
1201.90.1000	대두(기타/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	541	487	5	-	-	할당: 0%	TC	95.1
1201.90.2000	대두(기타/사료용)	3	541	487	5	-	-	-	TC	95.1
1201.90.3000	대두(기타/콩나물용)	3	541	487	5	-	-	-	TC	95.1
1201.90.9000	대두(기타/기타)	3	541	487	5	-	-	-	TC	95.1
2005.51.9000	콩(기타/탈각/조제저장처리)	20	35	22.9	-	0	-	-	-	-
2008.19.9000	견과, 땅콩외 기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45	59.2	45	-	-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5), pp. 23-204 중 돼지고기, 커피, 고추, 대두 등을 일부 발췌

(2)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양허관세 규정」 제2조에서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3가지로 나눈다. 첫째, 별표1의 가는 일반 공산품·수산물 및 일반 양허 농·축산물, 양허관세, 둘째, 별표1의 나 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셋째, 별표1의 다는 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이다.

이 세 가지 양허관세 중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에 해당하는 업종은 자유무역지역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 평가 시 관세 행정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평가,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⁶⁴⁾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는 제한하고 있다.

〈표 3-8〉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제한업종 규정

구분	지정 기준
입주 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64)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93호)」, 제18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구분	지정 기준
입주 제한 업종	1. 「관세법」 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 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 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 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원재료의 제조·가공 품목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1의 나’ 품목은 입주 시 관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별표1의 나’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청과 협의 없이 농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을 할 수 있어 커피 등은 관세청과 협의 없이 항만배후단지 등의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하다.

〈표 3-9〉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가공 시 관세청 협의 품목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수량 이내	시장접근 수량 초과
010221	10	00	젖소	0	89.1
010221	20	00	육우(肉牛)	0	89.1
010221	90	00	기타 번식용 축우(畜牛)	0	89.1
010231	00	00	번식용 버팔로	0	89.1
010290	10	00	기타 번식용 살아있는 소	0	89.1
010229	10	00	기타 축우(畜牛) 젖소	-	40
010239	10	00	기타 버팔로 젖소	-	40
010290	90	10	기타 젖소	-	40
010229	20	00	기타 육우(肉牛)	-	40
010239	20	00	기타 버팔로 육우(肉牛)	-	40
010290	90	20	기타 육우(肉牛)	-	40
010310	00	00	번식용 돼지	0	18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010511	10	00	번식용 닭	0	9
010594	10	00	기타 닭	0	9
020110	00	00	냉장 소고기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二分屠體)	-	40
020120	10	00	냉장 소고기 갈비	-	40
020120	90	00	기타 냉장 소고기	-	40
020130	00	00	기타 냉장 소고기 뼈 없는 것	-	40
020210	00	00	냉동 소고기 도체(屠體)와 이분도체 (二分屠體)	-	40
020220	10	00	냉동 소고기 갈비	-	40
020220	90	00	기타 냉동 소고기	-	40
020230	00	00	기타 냉동 소고기 뼈 없는 것	-	40
020712	10	00	냉동육 총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	20
020712	90	00	기타 냉동육	-	20
020714	10	10	절단육 다리	-	20
020714	10	20	절단육 가슴	-	20
020714	10	30	절단육 날개	-	20
020714	10	90	절단육 기타	-	20
021011	00	0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25
021019	00	00	기타 돼지고기	-	25
040210	10	10	탈지(脫脂)분유	20	176
040210	10	90	기타 탈지분유	20	176
040210	90	00	기타 가루·알갱이 지방분 1.5/100이하	20	176
040390	10	00	기타 버터밀크	20	89
040221	10	00	전지분유	40	176
040221	90	00	기타 전지분유	40	176
040229	00	00	기타 가루·알갱이 지방분 1.5/100초과	40	176
040291	10	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40	89
040291	90	00	기타 무가당우유	40	89
040299	10	00	가당연유(加糖煉乳)	40	89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040299	90	00	기타 가당연유	40	89
040410	10	11	사료용 유장분말	20	49.5
040410	10	19	기타 유장분말	20	49.5
040410	10	91	사료용 기타 유장	20	49.5
040410	10	99	기타 유장	20	49.5
040410	21	11	사료용 유당을 제거한 것	20	49.5
040410	21	19	기타 사료용 유당을 제거한 것	20	49.5
040410	21	21	사료용 무기질을 제거한 것	20	49.5
040410	21	29	기타 무기질을 제거한 것	20	49.5
040410	21	31	사료용 유장농축 단백질	20	49.5
040410	21	39	기타 유장농축 단백질	20	49.5
040410	21	91	기타 사료용 유당을 제거한 것	20	49.5
040410	21	99	기타 유당을 제거한 것	20	49.5
040410	29	10	기타 사료용 변성유장	20	49.5
040410	29	90	기타 변성유장	20	49.5
040510	00	00	버터	40	89
040590	00	00	기타 버터	40	89
040711	00	00	부화용 수정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 (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27
040719	00	00	기타 닭	-	27
040899	10	00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30	41.6
040900	00	00	천연꿀	20	243% 또는 1,864원/kg 양자 중 고액(율)
050690	20	00	뺏가루	5	25.6
051110	00	00	소의 정액	-	0
051199	20	10	돼지의 정액	-	0
051199	30	10	소의 것	-	18
051199	30	20	돼지의 것	-	18
051199	90	10	잠종(蠶種)	8	18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060220	10	00	사과나무	8	18
060220	20	00	배나무	8	18
060220	30	00	복숭아나무	8	18
060220	60	00	귤나무	8	18
060290	90	30	뽕나무	8	18
070110	00	00	종자용	0	304
070190	00	00	기타	30	304
070310	10	00	양파	50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20	00	00	건조 양파	50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0320	10	00	마늘 껍질을 깠 것	50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0320	90	00	기타 마늘	50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190	10	00	저장 마늘	50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290	10	00	그 밖의 마늘	50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0960	10	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50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0960	90	00	기타 단고추	50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190	50	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50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090421	00	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고추류	50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090422	00	00	후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0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331	10	00	녹두 종자용	30	607.5
071331	90	00	녹두 종자용 기타	30	607.5
071332	10	00	팥 종자용	30	420.8
071332	90	00	팥 종자용 기타	30	420.8
071410	10	0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신선한 것	20	887.4
071410	20	10	매니옥 칩	20	887.4
071410	20	90	기타 매니옥	20	887.4
071410	30	00	매니옥 냉장한 것	20	887.4
071410	20	20	매니옥 펠릿(pellet)	3	887.4
071420	10	00	고구마 신선한 것	20	385% 또는 338원/kg 양자 중 고액(율)
071420	20	00	고구마 건조한 것	20	385
071420	30	00	고구마 냉장한 것	20	385
071430	90	00	암[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기타	20	385
071440	90	00	토란 기타	20	385
071450	90	00	아메리카 토란 기타	20	385
071490	90	90	기타	20	385
080241	00	00	밤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0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080242	00	00	밤 껍데기를 벗긴 것	50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080290	10	10	밤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566.8% 또는 2,664원 /kg 양자 중 고액(율)
080290	10	20	밤 껍데기를 벗긴 것	30	566.8% 또는 2,664원 /kg 양자 중 고액(율)
080510	00	00	오렌지	50	50
080521	10	00	감귤	50	144
080521	90	00	기타	50	144
080522	00	00	클레멘타인(clementine)	50	144
080529	00	00	기타	50	144
080550	20	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50	144
080590	00	00	기타	50	144
081090	30	00	건조 대추	50	611.5% 또는 5,800원 /kg, 양자 중 고액(율)
081340	20	00	그밖의 대추	50	611.5% 또는 5,800원 /kg 양자 중 고액(율)
090210	00	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513.6
090220	00	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513.6
091011	10	00	생강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	377.3% 또는 931원/ kg 양자 중 고액(율)
091011	20	00	생강 건조한 것	20	377.3% 또는 931원/ kg 양자 중 고액(율)
091011	90	00	기타 생강	20	377.3% 또는 931원/ kg 양자 중 고액(율)
091012	10	00	생강 잘게부순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	377.3% 또는 931원 /kg 양자 중 고액(율)
091012	20	00	생강 잘게부순 건조한 것	20	377.3% 또는 931원/ kg 양자 중 고액(율)
091012	90	00	잘게 부순 기타생강	20	377.3% 또는 931원/ kg 양자 중 고액(율)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100210	00	00	호밀 종자	3	108.7
100310	10	00	맥주보리 종자	30	513
100390	10	00	맥주보리 기타	30	513
100310	20	00	겉보리 종자	20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100310	30	00	쌀보리 종자	20	299.7% 또는 361원/ kg 양자 중 고액(율)
100310	90	00	기타 종자	20	299.7
100390	20	00	기타 겉보리	20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100390	30	00	기타 쌀보리	20	299.7% 또는 361원/ kg 양자 중 고액(율)
100390	90	00	기타 곡물	20	299.7
110290	10	00	보릿가루	20	260
110319	10	00	펠릿 보리로 만든 것	20	260
110320	30	00	압착 보리로 만든 것	20	260
110419	20	00	기타 곡물 보리로 만든 것	20	233
110429	20	00	그밖의 곡물 보리로 만든 것	20	126
100410	00	00	귀리 종자	3	554.8
100510	00	00	옥수수 종자용	0	328
071290	20	91	스위트콘(종자용)	0	370
100590	10	00	사료용 옥수수	1.8	328
100590	20	00	팝콘	1.8	630
100590	90	00	기타	3	328
110313	00	00	가공곡물 옥수수로 만든 것	3	162.9
110423	00	00	부순알곡 옥수로 만든 것	3	167
110812	10	00	전분 식품용	1.8	226
110812	90	00	기타	1.8	226
071290	20	92	스위트콘(기타)	3	370
100610	00	00	벼	5	513
100620	10	00	메현미	5	513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100620	20	00	찰현미	5	513
100630	10	00	맵쌀	5	513
100630	20	00	찹쌀	5	513
100640	00	00	쇄미(broken rice)	5	513
110290	20	00	쌀가루	5	513
110319	30	00	그 밖의 쌀로 만든 것	5	513
110320	20	00	펠릿(pellet) 쌀로 만든 것	5	513
110419	10	00	기타 곡물로 만든 것 중 쌀로 만든 것	5	513
180690	22	90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 제품 제조용 혼합물	5	513
180690	29	99	기타 조제식품류	5	513
190120	10	00	베이커리제품 제품 제조용 혼합물 쌀가루의 것	5	513
190120	90	00	기타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5	513
190190	90	91	기타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쌀가루의 것	5	513
190190	90	99	기타 맥아추출물	5	513
100710	00	00	수수 종자	3	779.4
100810	00	00	메밀	3	256.1
100840	00	00	포니오(Fonio)[디지털리아(Digitaria)종]	3	800.3
100850	00	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3	800.3
100860	00	00	라이밀(triticale)	3	800.3
100890	00	00	그 밖의 곡물	3	800.3
100821	10	00	조	3	18
110290	90	00	기타 조	5	800.3
110311	00	00	밀로 만든 것	5	288.2
110319	20	00	귀리로 만든 것	5	554.8
110319	90	00	기타 부순알곡과 거친가루	5	800.3
110320	10	00	펠릿 부순 알곡 밀로 만든 것	5	288.2
110320	90	00	기타 펠릿 부순 알곡	5	800.3
110412	00	00	압착한 플레이크 모양 중 귀리로 만든 것	5	554.8
110419	90	00	기타 압착한 플레이크	5	800.3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110422	00	00	그 밖의 가공한 곡물 중 귀리로 만든 것	5	554.8
110429	10	00	울무로 만든 것	5	800.3
110429	90	00	기타 그 밖의 가공한 곡물	5	800.3
110510	00	0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5.4	304
110520	00	0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5.4	304
110710	00	00	맥아 볶지 않은 것	30	269
110720	10	00	훈연(燻煙)한 것	30	269
110811	00	00	밀로 만든 것	8	50.9
110819	90	00	기타 전분	8	800.3
110820	00	00	이눌린(inulin)	8	800.3
110813	00	00	전분 감자로 만든 것	8	455
350510	30	00	배소전분 텍스트린	8	385.7
350510	40	10	식품용 프리젤라티나이징 전분	8	385.7
350510	40	90	기타 프리젤라티나이징 전분	8	385.7
350510	50	10	식품용 에테르화전분	8	385.7
350510	50	90	기타 에테르화전분	8	385.7
350510	90	10	기타 식품용 에테르화전분	8	385.7
350510	90	90	기타 텍스트린	8	385.7
350520	10	00	전분 글루(glue)	8	201.2
350520	20	00	텍스트린 글루(glue)	8	201.2
350520	90	00	기타 글루	8	201.2
110814	10	00	식품용 매니옥(manioc)으로 만든 것	9	455
110814	90	00	기타 매니옥으로 만든 것	9	455
110819	10	00	그 밖의 전분 고구마로 만든 것	11	241.2
120190	10	00	기타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5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90	20	00	기타 사료용 대두	5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10	10	00	콩나물용 종자	5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120110	90	00	기타 종자	5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90	30	00	기타 콩나물용	5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90	90	00	기타 대두	5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230	10	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땅콩	40	230.5
120230	20	00	껍데기를 벗긴 것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땅콩	24	230.5
120241	00	00	기타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0	230.5
120242	00	00	껍데기를 벗긴 것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4	230.5
200811	90	00	기타 견과류	40	63.9
120740	00	00	참깨	40	630% 또는 6,660원/ kg 양자 중 고액(율)
120991	10	10	양파 종자	-	0
120991	10	90	기타 양파 종자	-	0
120991	20	00	무 종자	-	0
120991	90	00	기타 무 종자	-	0
120999	30	00	담배 종자	-	0
120999	90	00	기타 담배 종자	-	0
121120	11	10	산양삼(山養蔘)	20	222.8
121120	11	90	기타 산양삼	20	222.8
121120	12	11	산양삼 본삼	20	222.8
121120	12	19	기타 산양삼 본삼	20	222.8
121120	12	91	본삼	20	222.8
121120	12	99	기타 본삼	20	222.8
121120	13	11	본삼 홍삼	20	754.3
121120	13	19	기타 본삼 홍삼	20	754.3
121120	13	91	기타 본삼	20	754.3
121120	13	99	기타 홍삼	20	754.3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121120	22	10	가루(홍삼으로 만든 것)	20	754.3
121120	22	20	타블렛이나 캡슐 인삼	20	754.3
121120	22	90	기타 인삼	20	754.3
121120	31	00	인삼잎과 줄기	20	754.3
121120	32	00	인삼잎과 줄기 종자	20	754.3
121120	93	00	인삼잎과 줄기종자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20	754.3
121120	99	00	기타 인삼	20	754.3
130219	12	10	홍삼 추출물(extract)	20	754.3
130219	12	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20	754.3
130219	12	90	기타 홍삼 추출물 가루	20	754.3
210690	30	21	홍삼차	20	754.3
210690	30	29	기타 홍삼차	20	754.3
330190	45	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20	754.3
121490	10	00	사료용 뿌리채소류	5	100.5
121490	90	90	기타 사료용 뿌리채소류	5	100.5
230800	90	00	기타 사료용 식물성 물질	5	46.4
151550	00	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40	630% 또는 12,060원/ kg 양자 중 고액(율)
160241	90	00	기타 돼지 넓적다리살과 절단육	-	27
160242	90	00	기타 어깨살과 그 절단육	-	27
160249	90	00	기타 돼지로 만든 것	-	27
160250	10	00	소로 만든 것 중 밀폐용기에 넣은 것	-	72
160250	90	00	기타 소로 만든 것	-	72
170211	10	00	유당(乳糖)	20	49.5
170219	10	00	기타 유당(乳糖)	20	49.5
170290	10	00	인조꿀	20	243
200911	00	00	냉동한 것	-	54
200912	00	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54
200919	00	00	기타 오렌지주스	-	54

HS코드			품명	세율(%)	
				시장접근 물량 이내	시장접근 물량 초과
200931	90	00	기타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54
200939	90	00	기타 그 밖의 한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	54
220299	20	00	과실주스 음료	-	9
220710	90	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30	270
230110	10	00	육이나 설육(肩肉)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5	9
230690	10	00	참깨에서 나온 것 오일케이크	5	63% 또는 72원/kg 양자 중 고액(율)
230990	10	91	대용유(代用乳)	4.2	71
230990	20	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	50.6
230990	20	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	50.6
230990	20	99	기타 보조사료	5	50.6
230990	90	90	기타 사료용 조제품	5	50.6
500100	00	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51% 또는 5,276원/kg 양자 중 고액(율)
500200	10	20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8	51.7% 또는 17,215원 /kg 양자 중 고액(율)
500200	10	30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8	51.7% 또는 17,215원 /kg 양자 중 고액(율)
500200	10	40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8	51.7% 또는 17,215원 /kg 양자 중 고액(율)
500200	10	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8	51.7% 또는 17,215원 /kg 양자 중 고액(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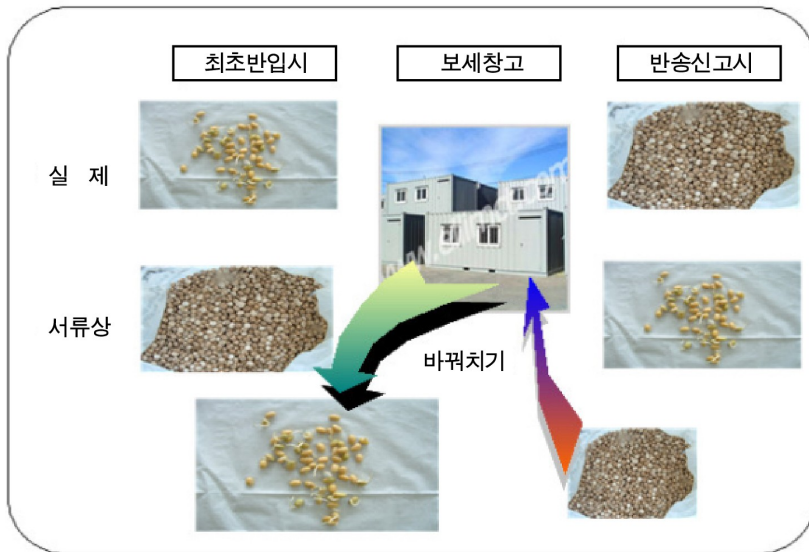
자료: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

3) 관세포탈 위반 사례

관세포탈 위반사례로는 고세율의 대두(기본세율 3%, 양허세율 541%)를 저세율의 볶은 콩(기본세율 45%, 양허세율 59.2%)으로 바꿔서 수입한 경우가 있다. 중국산 생대두(콩나물콩) 40톤(시가 1억 원 상당)을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하고, 컨테이너에 미리 수입해 놓은 볶음 대두를 적입하여 반송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⁶⁵⁾

〈그림 3-1〉 고세율 대두를 저세율 볶은 콩으로 대체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검색일: 2018.12.8.)의 첨부파일 'R0609610-2.hwp' p.8.

다른 관세포탈 위반사례로는 대리석 내부에 고세율의 건고추(기본 세율 50%, 양허세율 300%)를 은닉하여 수입한 경우가 있다. 중국산 건고추 6,925kg(시가 3,700만 원 상당)을 대리석 속에 은닉하여 대리석 383Pcs를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했다.⁶⁶⁾

65) KDI 경제정보센터(검색일: 2018.12.8.)에서 다운되는 'R0609610-2.hwp'파일의 p.8.

66) KDI 경제정보센터(검색일: 2018.12.8.)에서 다운되는 'R0609610-2.hwp'파일의 p. 10.

〈그림 3-2〉 대리석 내 건고추 은닉하여 수입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검색일: 2018.12.8.)의 첨부파일 'R0609610-2.hwp' p. 10.

3. 대외무역법 검토

「대외무역법(법률 제13838호)」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1)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

동법 제11조에서는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 생물자원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할 경우에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가능하다.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18-94호)의 별표1 수출금지품목, 별표2 수출제한품목, 별표3 수입제한품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수출 금지품목은 고래고기, 자연석, 모피류 등이다. 수출 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철강제품 등이다.

〈표 3-10〉 수출 금지품목

H S	품 목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9 기타(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9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516	화강암, 반암, 현무암, 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1 화강암
	11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20 사암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 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 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9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에 적합한 것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가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 꼬리부분/ 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재료를 가지지 않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H S	품 목
4303	19 기타
	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한 것에 한한다)
	모피의류·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90 기타

자료: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별표1

수출 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철강제품 등이다.

〈표 3-11〉 수출 제한품목

HS	품목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 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래·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 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HS	품목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HS	품목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체크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 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뺀기·밑판(sole plate)(베 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자료: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별표2

수입 제한품목은 항공기 관련 부품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표 3-12〉 수입 제한품목

HS	품목
3920.99.100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되지 아니한 것) 중 항공기용의 것
4011.3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 중 항공기용의 것
4012.13.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 중 항공기용의 것
4012.20.1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중고품) 중 항공기용의 것
4012.90.104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플랩 중 항공기용의 것
4013.90.1000	고무제의 인너튜브 중 항공기용의 것
4016.99.1010	가황고무제품(경질고무제품 제외) 중 기구, 비행선, 비행기계류, 그라인더, 연, 로토슈트의 부품
7007.11.1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8mm 이하)

HS	품목
7007.11.2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8mm 초과)
7007.21.1000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12mm 이하)
7007.21.2000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두께 12mm 초과)
8407.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의 것
8409.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1.11.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이하) 중 항공기용의 것
8411.12.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초과) 중 항공기용의 것
8411.21.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이하) 중 항공기용의 것
8411.22.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초과) 중 항공기용의 것
8411.8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이하) 중 항공기용의 것
8411.9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초과) 중 항공기용의 것
8411.99.1000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엔진의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2.10.1000	항공기 터보제트외의 반동 엔진
8412.9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부분품
8412.90.1090	기타 반동엔진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3.30.1000	연료, 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함) 중 항공기용의 것
8414.10.1000	진공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1.1000	팬 중 항공기용의 것
8802.20.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항공기
8802.30.1000	자중 2,000KG 초과 15,000KG 이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30.2000	자중 2,000KG 초과 15,000KG 이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30.3000	자중 2,000KG 초과 15,000KG 이하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30.9000	자중 2,000KG 초과 15,000KG 이하 기타 항공기
8802.40.1000	자중 15,000KG 초과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2000	자중 15,000KG 초과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3000	자중 15,000KG 초과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40.9000	자중 15,000KG 초과 기타 항공기

HS	품목
8802.60.1010	인공위성
8802.60.1090	기타 우주선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8802.60.3000	서보비털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8803.20.0000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30.1000	기타 부분품 중 비행기용의 것
8803.30.2000	기타 부분품 중 헬리콥터용의 것
8803.90.1000	글라이더, 행글라이더용의 부분품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 포함)용의 부분품
8803.90.9000	기타 항공기의 부분품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 포함)
8804.00.2000	로토슈트
8804.00.9010	낙하산의 부분품
8804.00.9020	로토슈트의 부분품
8805.10.1010	군경용 항공기 발진장치
8805.10.1090	기타 항공기 발진장치
8805.10.2010	군경용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2090	기타 갑판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9010	군경용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10.9090	기타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21.1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1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2010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1.2090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9.1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1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2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8805.29.2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9014.10.1010	자이로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10.2010	자기식 방향탐지용 콤파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콤파스 제외)

HS	품목
9014.90.1000	방향탐지용 콤팩스와 기타 항행용기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9.1000	기타 팬 중 항공기용의 것
8414.60.1000	후드 중 항공기용의 것
8414.80.9110	기체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3.2000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9.4000	기타 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1.2000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9.9030	기타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66.20.1000	가공용 홀더 중 항공기용의 것
8483.10.1000	전동축과 크랭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20.1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 롤러베어링 갖춘 것) 중 항공기용의 것
8483.30.1000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 롤러베어링 갖추지 않은 것)과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중 항공기용의 것
8483.40.101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8483.40.1090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외 기타부품
8483.50.1000	플라이휠과 폴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60.1000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중 항공기용의 것
8483.90.100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11.10.1000	점화플러그 중 항공기용의 것
8511.20.100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중 항공기용의 것
8511.30.1000	배전기와 점화코일 중 항공기용의 것
8511.40.100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50.1000	기타 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80.1000	기타 내연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90.1000	기타 내연기기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26.10.1000	레이다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1010	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2010	초단파 수신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3010	무선방향 탐지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9010	기타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 중 항공기용의 것

HS	품목
8801.0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801.00.9090	기타 무동력 항공기
8802.11.1000	자중 2,000KG 이하의 군용 헬리콥터
8802.11.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헬리콥터
8802.12.1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군용 헬리콥터
8802.12.9000	자중 2,000KG 초과하는 기타 헬리콥터
8802.20.1000	자중 2,000KG 이하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20.2000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20.3000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제트식 항공기
9032.10.1020	가변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1010	액면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2010	유량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9010	기타 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2010	전압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3010	기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9010	기타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90.1000	자동조정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9401.10.0000	항공기용의 의자

자료: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별표3

2) 수입품목 원산지 표시

(1)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2항에서는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2호)」 제75조에

따라 수입물품 중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규정 별표 8과 같다. 돼지고기(HS 0203), 커피(HS 2101) 등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 3-13〉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HS류별	품목코드
01류	0102, 0106(자라에 한함)
02류	0201, 0202, 0203(돼지고기),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3류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04류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0409, 0410
05류	0504, 0506, 0507, 0510
06류	0601, 0602, 0603, 0604
07류	0701,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08류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0813, 0814
09류	0901, 0902, 0903, 0904, 0906, 0907, 0908, 0910
10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류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2류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1, 1212
13류	1302
15류	1501, 1502, 1503, 1504,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20, 1521, 1522
16류	1601, 1602, 1603, 1604, 1605
17류	1701, 1702, 1703, 1704
18류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9류	1901, 1902, 1903, 1904, 1905
20류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류	2101(커피), 2102, 2103, 2104, 2105, 2106

HS류별	품목코드
22류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3류	2301, 2303, 2308, 2309
24류	2401, 2402, 2403
25류	2501
28류	2815, 2853
30류	3003, 3004, 3005, 3006
31류	3101
32류	3201, 3202, 3203, 3204, 3205, 3206, 3207, 3208, 3209, 3210, 3211, 3212, 3213, 3214, 3215
33류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4류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6류	3604, 3605, 3606
37류	3702, 3703, 3704, 3707
38류	3808, 3814, 3820, 3824, 3826
39류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40류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1류	4114, 4115
42류	4202, 4203, 4205, 4206
43류	4303, 4304
44류	4402,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6류	4601, 4602
48류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3, 4814,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3
49류	4905, 4909
50류	5006, 5007
51류	5109, 5110, 5111, 5112, 5113

HS류별	품목코드
52류	5204,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53류	5309, 5310, 5311
54류	5401, 5406, 5407, 5408
55류	5502, 5508,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6류	5601, 5602, 5603, 5604
57류	5701, 5702, 5703, 5704, 5705
58류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9류	5909(소방호스에 한함)
60류	6001, 6002
61류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17
62류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6217
63류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6309, 6310
64류	6401, 6402, 6403, 6404, 6405, 6406
65류	6501, 6502, 6504, 6505, 6506, 6507
66류	6601, 6602, 6603
67류	6704
68류	6801, 6802, 6804, 6806, 6809, 6810, 6815
69류	6902, 6903, 6906, 6907, 6908, 6910, 6911, 6912, 6913, 6914
70류	7003, 7004, 7005, 7006, 7007, 7008, 7009, 7010, 7013, 7014, 7015, 7018, 7019, 7020
71류	7113, 7114, 7116, 7117
72류	7208, 7210(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7214, 7216, 7219, 7225, 7226, 7228
73류	7307(플랜지에 한함), 7311, 7315,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7325, 7326
74류	7415, 7418, 7419
75류	7508
76류	7607, 7612, 7613, 7615, 7616
78류	7806
79류	7907
80류	8007

HS류별	품목코드
82류	8201, 8202, 8203, 8204, 8205, 8206, 8207, 8208, 8209, 8210, 8211, 8212, 8213, 8214, 8215
83류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4류	8407, 8408, 8409,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1, 8422, 8423, 8424, 8425,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2, 8443, 8448, 8450, 8451, 8452, 8453, 8456,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6, 8479, 8481, 8482, 8483, 8484, 8487
85류	8501,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7류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 8713, 8715, 8716
89류	8903
90류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11, 9012, 9013, 9015, 9016, 9017,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1, 9032, 9033
91류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9114
92류	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9209
94류	9401, 9402, 9403, 9404, 9405
95류	9503, 9504, 9505, 9506, 9507, 9508
96류	9603, 9604, 9605,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9613, 9614, 9615, 9616, 9617, 9618, 9619

자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별표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A 국가에서 원료 채취부터 생산된 물품인 완전생산물품은 A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최종

적인 변형이 일어나 본질적 특성이 변환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하지만 단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가 없다.

〈표 3-14〉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구분	지정 기준
완전생산 물품	•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 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실질적 변형	•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단순한 가공활동	•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자료: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14호)」 제61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새끼 돼지가 칠레로 수입되어, 삼겹살이 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된 경우에는 칠레산이 되지 못한다. 칠레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삼겹살만 칠레산으로 인정받아 한-칠레 FTA 협정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FTA 협정과는 예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다른 국가일지라도 도축된 곳이 미국이면 미국산으로 인정된다. 미국에서 도축되어 수입된 삼겹살은 미국산으로 인정되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다.⁶⁷⁾

(2) 수입품목 가공생산 후 원산지 표시

국내 수입 후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단순 가공형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67) 이명호(2010), pp. 86-90.

〈표 3-15〉 수입 후 단순가공 제품의 원산지 표시

구분	지정 기준
원산지 은폐·제거 우려 제품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
대형포장 수입 후 소분 포장 물품	-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 - 날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풋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
따로 수입되어 세트로 결합되는 물품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예 :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케이스, 라이터와 라이터케이스 등)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

자료: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14호)」 제78조

(3)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개인 탁송품 또는 휴대품, 실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통과화물 및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등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다.

〈표 3-16〉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

구분	지정 기준
원산지 표시 면제 수입 물품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 건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차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자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4. 관련 법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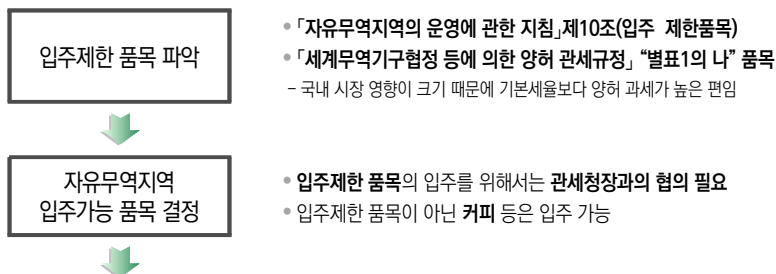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가능한 농·축산물 가공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품목) 규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별표1의 나’ 품목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농산물, 축산물 시장 등의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하여 양허관세를 높게 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해당 품목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늘, 양파, 녹차 등 ‘별표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인 커피 등은 입주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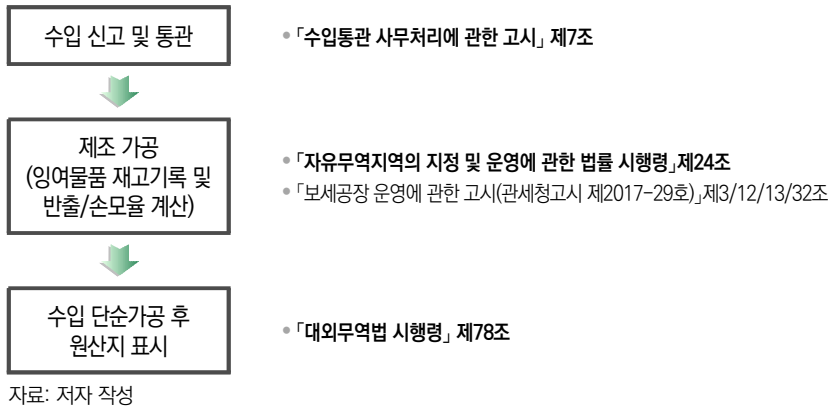
입주가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수입 신고 및 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해당 품목을 입주시킨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가공 시 재고, 잉여물품의 재고 기록 및 반출, 손모을 계산 등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침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32조에 따라 실시한다.

수입해서 단순 가공 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의 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3-17〉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기업 입주 관련 법





제2절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사

1.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사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주체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무역·외국인투자·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업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할 필요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는 부처의 중요한 과제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화물관리체계의 수립 및 제도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세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농산물수입에 대한 불법탈세 적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만든 제도로 해당 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 허용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문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및 임대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 가공업의 허용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품목별 손모율 관리가 어렵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가공업이 제한되는 이유는 제조 및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유실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불가능하며, 품목별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아 화물의 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내용의 규제는 꾸준히 고려된 바 있으나 과거 탈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유실분 및 손모율 관리방안 등 명확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규제가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 제시가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 농업인의 소득,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책임지는 주관 부처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과 농민들의 피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 및 가공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우리 농산물 및 농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무역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규모를 사전에 산정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항만공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취지와 달리 농·축산물 가공업에 대한 입주 제한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입주기업들은 사업 확대를 위해 커피 생두를 수입하여 로스팅 후 재수출하거나 냉동육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모델 등을 추진하였지만 번번이 세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유실분이나 손모을 등 화물관리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산물의 가공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법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초기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탈세 방지를 위해 특정 업종의 입주 자체를 제한하기 전에 관세당국의 불법탈세 방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소결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허용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의 반입·반출을 관리하는 관세청, 국내 농·축산업을 대변하는 농림수산물품부, 항만배후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항만공사 등 여러 이해관계기관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항만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하여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과 농림수산물품부의 경우, 실무적 관리의 어려움과 농민보호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 화물의 탈세를 주시하는 감독자 입장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농·축산물 손모율 표준화 가능 여부, 식품의 원산지 및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장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국내외 현황분석, 관련 법·제도 분석, 이해관계기관 의견 조사 등을 통해 다음 두 가지 관련 이슈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이슈는 농·축산물 수입 원재료 밀수입 및 관세 포탈의 위험이다. 이는 가공 전 투입물과 가공 후 산출물 간 중량 감소(손모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제고관리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농가보호 문제이다. 저렴한 가격의 1차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관세유보 상태에서 생산된 2차 가공식품을 국내에 유통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법상 농가보호 등을 위해 1차 농·축산물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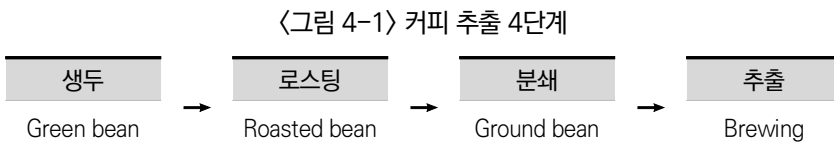
제4장에서는 실험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절 농·축산물 손모율 관리 방안

제3장 이해관계기관 인터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기업의 입주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축산 품목에 대한 손모율 표준화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두 가지 품목에 대한 손모율 표준화 가능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WTO 협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인 커피 및 돼지고기를 case study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농·축산물 손모율 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커피

커피 추출은 <그림 4-1>과 같이 4단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인 로스팅에서 발생하는 생두의 중량감소이다. 커피 산업과 관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종의 비즈니스 모델은 생두를 수입하여 로스팅과정을 거쳐 국내로 원두를 반입하는 것이다.



자료: 유대준(2009), p. 145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 생두 중량감소 표준화

생두의 중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로스팅, 저장 기간, 결점두(퀘이커) 비중 등이 있다. 생두는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중량, 질량, 밀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생두가 열을 받으면 콩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중량감소가 발생한다. 생두의 수분함량은 10~12% 수준이나 원두의 경우에는 2~3%에 불과하다. 즉 생두 중량감소의 대부분은(84~85%) 수분 증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원산지별, 품종별 초기 수분함유율 및 밀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로스팅 시간에 따른 생두의 중량 감소는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다. 유대준(2009)에 따르면 Light 로스팅일 경우 생두의 중량 감소는 12~14% 가량 발행하며 Medium 로스팅은 15~17%, Dark 로스팅은 18~25%가 발생한다.

〈표 4-1〉 로스팅 단계별 생두의 중량감소

상태	Yellow 단계			1차 Crack		2차 Crack	
로스팅 단계	-			Light		Medium	Dark
색깔	Green	Yellow	Cinnamon	L.Brown	M.Brown	D.Brown	Black
향	풋내	단향	단향+신향	신향	신향+고유향	고유향	향의 감소
형태	생두	수축		팽창		지속팽창	팽창멈춤
중량 감소	-			12~14%		15~17%	18~25%

자료: 유대준(2009), p. 150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유대준(2009)에 따르면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위 25에서 북위 25 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나라에서 생산되며, 이 중 주요 60여개 국가는 북위 18에서 남위 18에 위치하고 있다. 커피의 수확

시기는 지역마다 다양하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콜롬비아와 케냐는 1년에 2번의 수확기가 있는 반면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 에티오피아 등과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주 수확기가 대체로 10~2월 사이이다. 반면 남반구에 위치한 브라질, 페루, 짐바브웨 등의 국가들은 주 커피 수확기가 6~10월이다.⁶⁸⁾

즉, 다른 농산물과 같이 커피 생산은 계절성이 있는 반면 소비는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두 수입 후 6개월에서 1년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온도 20℃ 이하, 상대 습도 수준 60% 미만이 적정 보관환경이기는 하나 저온저장 창고의 부족, 비용 등의 이유로 생두 수입 업체들은 실온창고를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증량 감소는 1~2%로 크지 않은 수준으로 표준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⁹⁾

결점두는 생두 중에 결함이 있는 콩으로 소규모 로스팅 업체의 경우 핸드 픽(hand pick)으로 선별한다. 그러나 전체 수입량 중 결점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중·대형 로스팅 플랜트의 경우 자동 선별기계의 높은 비용 등을 이유로 걸러내지 않고 있다. 즉, 결점두로 인한 투입량-산출량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⁷⁰⁾

(2) 시사점

생두의 증량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인 로스팅 과정, 보관 기간 및 방법, 결점두 비중 등을 살펴본 결과, 생두의 증량감소 표준화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커피 로스팅 플랜트별 주 취급 생두의

68) 유대준(2009). P.63.

69) 한국커피협회 서천우 전문가(2018.11.30., 대한민국 부산)

70) 한국커피협회 서천우 전문가(2018.11.30., 대한민국 부산)

원산지, 품종 등 특성에 맞는 로스팅 포인트에 대한 투입물 대비 산출물의 중량 감소에 대한 개별 실험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감소율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생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자유무역지역 내 로스팅 가공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수입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무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수출될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아시아 커피 로스팅 플랜트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돼지고기(후지)

(1) 실험 개요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인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식품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가공 비즈 모델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했다⁷¹⁾. 돼지고기 가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는 후지이며 저장 기간은 최대 한 달을 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돈육 후지를 대상으로 저장기간 경과(최대 20일)에 따른 저장감량을 살펴보았다.

저장감량이란 식육이 저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식육 내의 수분 등 수용성 성분들이 삼출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분 등의 삼출로 인하여 저장 전과 비교하여 식육의 무게가 감소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육 내에 약 70~7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는 자유수, 고정수, 결합수로 존재한다. 이중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는 자유수 및 고정수가 먼저 삼출되어 나온다.

71) 인천항 콜드프라자(2018.9.3., 대한민국 부산)

자유수는 유리수라고도 하며 단백질 전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수분을 지칭한다. 식육의 수분 중에서도 자유수의 양에 따라 식육 품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고정수는 결합수 외부에 존재하며 물 분자끼리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단백질 전하의 전기 인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마지막으로 결합수는 단백질 분자표면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리가 어려운 수분의 형태이다.

돈육 후지 샘플을 진공포장한 후 4℃⁷²⁾에서 저장기간(0, 3, 5, 7, 10, 15 및 20일)이 경과함에 따라 무게를 측정했다. 저장감량은 원 샘플무게 대비 발생한 무게 감소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샘플의 양이 작으므로 실험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및 근막은 가능한 제거하고 적육을 트리밍하여 사용하였고 6회 반복 실험하였다.

$$\text{저장감량(\%)} = \frac{[(\text{저장 전 샘플 무게(g)} - \text{저장 후 샘플 무게(g)}) / \text{저장 전 샘플무게(g)}] \times 100}$$

(2) 실험 결과

실험 결과 4℃ 냉장상태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장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육 내에 존재하는 수용성 성분 등을 포함한 수분 등이 저장이라는 물리적 힘에 의하여 중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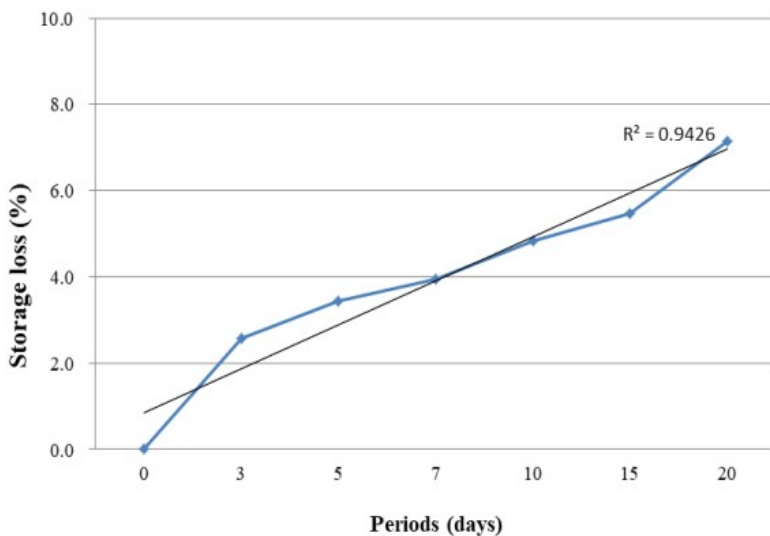
〈표 4-2〉는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6개 돈육 샘플의 중량감소를 나타낸 것이다. 냉장보관 20일 경과 시 돈육의 평균 저장감량은 7.13%으로 3일 경과된 경우(2.58%)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준이다. 그래프는 실험

72) 냉동보관의 경우 저장감량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냉장보관일 경우에 대해 실험을 설계하였다.

결과가 $Y(\text{저장감량})=0.98X(\text{저장기간})$ 수식에 R^2 는 0.94 수준으로 적합함을 보이고 있다. 즉, 저장감량과 저장기간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표 4-2〉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돈육의 저장감량 변화

샘플	0일	3일	5일	7일	10일	15일	20일
1	0.00	2.55	3.76	4.23	5.56	6.67	7.36
2	0.00	1.95	2.75	3.49	4.11	4.98	6.99
3	0.00	1.86	2.58	2.88	3.80	4.39	6.04
4	0.00	3.29	3.79	4.32	5.24	5.29	6.28
5	0.00	2.72	3.41	4.15	5.08	5.63	7.92
6	0.00	3.09	4.27	4.53	5.22	5.86	8.20
평균	0.00	2.58	3.43	3.93	4.83	5.47	7.13
표준 편차	0.00	0.58	0.65	0.63	0.71	0.78	0.87



자료: 저자 작성

(3) 시사점

돈육의 경우 수입부위(삼겹살, 목심, 갈비, 뒷다리, 앞다리, 등심 등) 및 보관방식(냉동, 냉장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손모율의 표준화가 어려운 품목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같이 동일 조건하에서 돈육 샘플 간 저장감량의 표준편차가 작은 수준(0.5~0.8)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수입 부위, 저장기간 등을 설정한다면 모델별 저장감량의 표준화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커피와 돼지고기(후지)에 대한 case study를 통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생두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로스팅 단계별 중량 감소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 졌다. 돼지고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량 감소에 대한 표준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기업의 한정된 비즈니스 모델하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모든 수입 농축산 품목별 표준화 연구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 또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별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안서에 비즈니스 모델별 농·축산물 원재료 중량감소 표준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원재료에 대한 예측가능하지 않은 중량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포탈, 밀수 등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소비자 인식 조사

1. Food Value 소비자 조사 설계

소비자의 농·축산물 가공식품 소비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12가지 식품선택가치(Food Value)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12가지 식품선택가치는 동물복지, 식품의 외형, 편의성, 환경에 대한 영향, 공정성, 자연주의, 영양학적 가치, 원산지, 가격, 안전성, 맛, 새로움 등이다. Lusk & Briggeman(2008)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 패턴을 예측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품선택의 일반적 기준인 12가지 식품선택가치를 결정⁷³⁾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추정하였다.⁷⁴⁾ 12가지 식품선택가치는 소비자 식품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표 4-3>은 12가지 식품선택가치를 정의한 것이다.

<표 4-3> 12가지 식품선택가치 정의

식품선택가치	설 명
동물복지	•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
식품의 외형	• 식품의 모양이 구매의사를 자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편의성	•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인가의 여부
환경에 대한 영향	• 식품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 생산자, 제조회사, 소매상, 소비자의 이익이 동등한가의 여부
자연주의	• 현대적 기술이나 아무런 첨가제 없이 생산, 제조된 식품인가의 여부
영양학적 가치	•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의 양과 종류
원산지	• 농축산품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대한 여부
가격	• 식품의 가격
안전성	• 식중독 등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맛	• 입에서 느껴지는 식품의 맛
새로움	• 한번도 맛본 적 없는 제품

자료: Lusk and Briggeman(200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73) 12가지 식품선택가치는 소비자 식품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74) Lusk and Briggeman(2008).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들의 식품선택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봄으로서 수입 원재료 가공업체의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허용에 대한 농가, 축가, 기존 제조업시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그림 4-2>와 같은 8개 BW(Best Worst) 문항에서 6가지 식품선택가치 중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와 가장 덜 중요시 하는 가치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림 4-2> 설문 예시

【참고】

Q1 다음 식품선택가치 중 식품구매 시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와 가장 중요시 하지 않는 가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 (1개만 선택)	가장 중요시 하지 않는 가치 (1개만 선택)
	↓	↓
원산지(농산물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대한 여부)	●	●
안전성(식품류 등의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	●
동물 복지(사육되는 동물의 복지)	●	●
환경에 대한 영향(식품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영양학적 가치(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의 양과 종류)	●	●
가격(식품의 가격)	●	●

자료: 저자 작성

일반 소비자 총 513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여성 및 남성의 비중은 각 50%이고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학력의 경우 4년제졸이 52.8%로 가장 많으며 연간 가정 소득은 2,000~3,999만 원 이하 30%, 4,000~5,999만 원 이하 27.2%로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해당 구간에 속해 있다.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주체냐는 질문에 전체 7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족 구성원이 같은 비율로 식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8.1%이다. 즉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 소비자’로서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4〉 응답자 개요

구분		응답자 수
성별	여성	254 (50.0%)
	남성	259 (50.0%)
연령	20대	95 (18.5%)
	30대	102 (19.8%)
	40대	119 (23.1%)
	50대	118 (23.0%)
	60대 이상	79 (15.3%)
혼인상태	미혼	158 (30.8%)
	기혼	324 (63.2%)
	별거	4 (0.8%)
	이혼	22 (4.3%)
	사별	5 (1.0%)
학력	고졸 미만	7 (1.4%)
	고졸	111 (21.6%)
	대학 중퇴	11 (2.1%)
	2년제졸	69 (13.5%)
	4년제졸	271 (52.8%)
	석사	40 (7.8%)
	박사	4 (0.8%)
연간 가정 소득	1,999만 원 이하	46 (9.0%)
	2,000~3,999만 원 이하	154 (30.0%)
	4,000~5,999만 원 이하	140 (27.2%)
	6,000~7,999만 원 이하	88 (17.1%)
	8,000~9,999만 원 이하	45 (8.7%)
	1억 원 이상	40 (7.8%)
주 소비자 여부	주 소비자	360 (70.2%)
	주 소비자 아님	60 (11.7%)
	가족 구성원이 같은 비율로 식품 구매	93 (18.1%)

자료: 저자 작성

본 소비자 식품선택가치 설문은 212 main-effects orthogonal experimental design에 따라 6가지 가치에 대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비자들은 6가지 가치 중 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8번 반복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기관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다른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비자는 식품구매 시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할 것이다. 가설 2, 소비자는 '원산지'를 식품 선택 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로 응답할 것이다.

2. 계량 모델-Random Parameter Logit model

BW 문항 분석을 위해 Random Parameter Logit(RPL) 모델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A)와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B)를 선택하였다. 즉,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A와 B의 거리가 가장 먼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다.

λ_j 를 j 번째 식품선택가치의 중요도라고 정의하면 소비자 i 의 관찰되지 않는 latent 중요도는 $I_{ij} = \lambda_j + \epsilon_{ij}$ 이며 ϵ_{ij} 은 random error term이다. $J(J-1)$ 개 choice set 중 소비자가 j 번째 식품선택가치를 Best로 k 번째 가치를 Worst로 선택할 확률은 I_{ij} 와 I_{ik} 의 차이가 모든 $J(J-1)-1$ 개 choice set 보다 클 확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ϵ_{ij} 가 i.i.d. type I extreme value이면 MNL (multinomial logit)은 다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text{Prob}(j \text{가 } best, k \text{가 } worst \text{로 선택되는 경우}) = \frac{e^{\lambda_j - \lambda_k}}{\sum_{l=1}^J \sum_{m=1}^J e^{\lambda_j - \lambda_k} - J}$$

파라미터 λ_j 는 식 (1)을 바탕으로 LLF(Log likelihood function)를 극대화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dummy variable trap’ 대비 j 식품선택가치의 상대적 중요도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식품선택가치의 중요도이다. 식 (1)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식품소비가치에 대한 동일한 중요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성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모델은 RPL(Random Parameter Logit)이다. I 번째 개인의 j 번째 식품선택가치에 대한 중요도는 다음 수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tilde{\lambda}_{ij} = \bar{\lambda}_j + \sigma_j \eta_{ij}$$

s.t. $\bar{\lambda}_j$ 는 λ_j 의 평균

σ_j 는 λ_j 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η_{ij} 는 random term normally distributed with 평균 0, 표준편차 1

식 (2)를 식 (1)에 대입시키면 RPL의 $\text{Prob}(j \text{가 } best, k \text{가 } worst \text{로 선택되는 경우})$ 을 구할 수 있다. RPL은 200 pseudorandom Halton draws for η_{ij} 가정하에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PL 파라미터 추정치의 상대적 중요도를 해석하기 위해 다음 식 (3)을 추정하였다.

$$(3) \text{ Share of preference}(j) = \frac{e^{\hat{\lambda}_j}}{\sum_{k=1}^J e^{\hat{\lambda}_k}}$$

각 선택가치의 Share of preference를 합한 값은 1이며, 선택가치별 상대적 중요도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j 선택가치는 k 선택가치보다 2배 더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등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3. Food Value 소비자 조사 분석 결과

RPL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식품선택가치이며 ‘새로움’(분석 결과 가장 덜 중요한 가치) 대비 더 중요한 가치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을 가진다. 다음으로 ‘맛’, ‘영양학적 가치’, ‘가격’ 등이 중요한 가치로 분석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가격보다는 안전성, 맛, 영양요소 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가장 덜 선호되는 가치는 ‘편의성’이며 그 다음이 ‘공정성’이다(〈표 4-5〉참조).

RPL 추정치에 대한 해석은 요소 간 상대 비교는 가능하나 추정치 크기 자체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hare of preference를 산정하여 12가지 식품선택가치 간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26.2%는 안전성을 식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

라고 했으며 19.8%는 맛, 13.5%는 원산지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안정성의 경우, 영양학적 가치 및 가격보다 2배 더 중요한 가치이며 동물복지, 편의성, 공정성, 식품의 외형, 새로운 대비 10배 더 중요한 가치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가설 1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격도 자연주의, 환경에 대한 영향 등 보다 2~3배 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안정성, 맛 등의 가치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외국산 원재료를 가공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할지라도 국내 가공제품이 ‘안정성’, ‘맛’, ‘원산지’, ‘영양학적 가치’ 등의 식품선택 가치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설 2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13.5%가 ‘원산지’가 식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가치 대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Loureiro & Umberger(2005)는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쇠고기가 수입 쇠고기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연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⁷⁵⁾ 또한 Jo & Lusk(2018)에서는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캐나다 대비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식품 소비 시 ‘원산지’의 중요도가 높음을 보였다.⁷⁶⁾

환경에 대한 영향, 동물복지, 편의성, 공정성, 식품의 외형, 새로움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응답자들이 중요한 요소로 선택하였다. 즉, 한국 소비자들의 식품구매 시 사회적 가치(환경, 동물복지, 공정성 등)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75) Loureiro and Umberger(2005).

76) Jo and Lusk(2018).

〈표 4-5〉 RPL 분석 결과

변수	RPL	Share of Preference
동물 복지	1.778***	0.025
	0.058 ^a	
	1.056*** ^b	[0.020 0.030]
	0.062 ^c	
식품의 외형	1.790***	0.022
	0.057	
	.884***	[0.018 0.026]
	0.061	
편의성	.723***	0.025
	0.060	
	1.400***	[0.021 0.029]
	0.060	
환경에 대한 영향	1.804***	0.032
	0.057	
	.755***	[0.027 0.036]
	0.061	
공정성	1.508***	0.023
	0.054	
	.7036***	[0.020 0.027]
	0.063	
자연주의	1.810***	0.051
	0.061	
	1.237***	[0.043 0.058]
	0.055	
영양학적 가치	3.128***	0.117
	0.063	
	1.101***	[0.103 0.131]
	0.061	

변수	RPL	Share of Preference
원산지	1.578***	0.135
	0.063	
	1.400***	[0.118 0.152]
	0.052	
가격	2.752***	0.101
	0.075	
	1.935***	[0.088 0.115]
	0.069	
안전성	4.036***	0.262
	0.072	
	1.545***	[0.238 0.286]
	0.068	
맛	3.270***	0.198
	0.060	
	.795***	[0.179 0.217]
	0.078	
새로움	-	0.009
		[0.008 0.010]

자료: 저자 작성

4. 소결

식품선택가치(Food Value)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식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이 아닌 ‘안전성’, ‘맛’, ‘원산지’ 등이다.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와는 달리 국산가공 식품의 경우 안정성과 원산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수립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커피 및 돼지고기 후지살의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국내 시장의 수급불균형, 생산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제 5 장

관세행정 개선(안) 및 입주 선정 절차(안)

제1절 관세행정 개선(안)

1.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본 연구에서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 <표 5-1>과 같이 세 가지 품목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⁷⁷⁾ 별표 1의 나에 속하지 않는 품목 중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②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 후 국외로 반출(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77)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特惠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관세청과의 협의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별표 1의 나에 속하지 않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관세포탈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므로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은 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속하지 않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내에 반입(수입)되는 경우와 ②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외 반출(수출)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즉, 세계무역기구협정(WTO)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농림축산품목이기는 하지만 국내 반입 시 시장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를 2차 대상 품목으로 정의하고 관세행정 개선(안) 제안 시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정의된 품목은 국내와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이다. 또한 동법 제7조(시장접근물량증량) ①에서는 자연재해·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1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국내 생산기반 및 국내 시장의 불균형 유발 등을 고려하여 법상 제제한 품목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해당품목의 가공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내

가공과정을 거쳐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법의 당초 목적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허용 불가 품목’은 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대상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내 반입되는 경우 및 ②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정의한다. 사실상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주로 항공기 관련 부품 등으로 농림축산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 5-1〉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정의

구분	정의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②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외반출 되는 경우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내 반입되는 경우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외반출 되는 경우
입주허용 불가 품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내반입 되는 경우 •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제한된 품목

자료: 저자 작성

2. 관세행정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대외무역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관련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같이 부가가치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는 별표1의 나 항목과 같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림축산물 산업을 보호하고자 품목별로 시장접근물량을 수립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보전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국내반입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입주기업 선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의’등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농림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주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 제조업체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세행정의 관리·감독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A는 국내 농가보호, 국내 농림축산물 시장 불균형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운 품목인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대한 것이다. 해당 품목을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가공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계획서상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입 원재료별 손모율을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제3자의 검증, 심사 등을 거쳐 입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⁷⁸⁾

반면 국내농가보호는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개선방안 B 대상 품목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별 손모율 표준화뿐 아니라 우리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별표 1의

78)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의 경우, 국내 반입 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농림축산물 특성 상 관세 포탈의 위험이 남아있으므로 ‘손모율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우리 농가 보호를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산업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가공과정을 거쳐 국외로 반출될 경우에는 국내 농림축산물 시장을 교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해당 경우에 한 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⁹⁾

마지막으로 개선방안 C는 입주허용 불가 품목에 대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제조 및 가공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대외무역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2〉 관세행정 개선 방향 개요

구분	관세행정 개선 방향	대상 품목
개선방향 A	• 국내 농가 보호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운 품목 • 입주 희망 기업이 Biz-model별 수입원재료의 손모을 정도를 제시할 경우 입주 허가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개선방향 B	• 입주 희망 기업이 Biz-model별 수입원재료의 손모을 정도를 제시 • 우리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 계획 제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개선방향 C	• 입주허용 불가 품목	• 입주허용 불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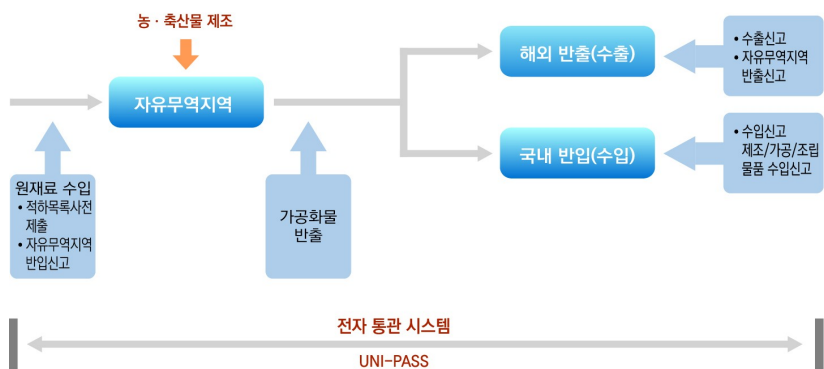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79)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 시장에 유입됨으로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회비용 개념에서의 간접적인 피해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세행정(안)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물 관세포탈, 밀수 등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청의 인력·재정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인원을 확충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적하목록 사전제출,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수입신고, 제조·가공·조립한 물품의 수입신고, 반출신고, 수출신고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외국물품이 하선한 단계부터 자유무역지역 반입, 제조·가공 후 국내외 반출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것을 전자화·데이터화한 것이다. <그림 5-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1〉 물품 신고 절차도



자료: 저자 작성

다음 <그림 5-2>은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입신고서, 일시반출 및 기간연장승인(신청)서, 분실(폐기·멸각) 신고서, 폐기·멸각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서식을 예시로 보여준 것이다. 서식을 살펴보면 모두 품명, 규격, 중량 등에 대해 기재하게 되어 있다. 즉,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물의 가공 전 투입물, 가공 후 산출물의 중량 비교가 가능하며 공정상 발생하는 손모율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추가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농림축산물의 손모율 등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5-2〉 자유무역지역 반입·반출 신고서(예시)

<별지 제1호 서식>

신고번호		자유무역지역 출품반입신고서				제외기간 특시	
신고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반입일시	반입장소번호		☐ 제조업체 ☐ 물류업체 ☐ 기타				
반출사유							
반 입 물 종 내 역							
내 국분	화물관리번호	B/L(AWB) 번호	품명·규격	포장명세		중량	
	MFN	MEN	ESN		개수	단위	
자유무역지역외지점통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을 신고합니다. 2000. 위 신고자 세 관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분실(폐기·열거)신고서		제외기간 특시	
신고자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분실(폐기·열거)물품 내역			
품 명	규 격	수량/중량	가 격
특수명(상호/성명)			
분실(폐기·열거)의 사유			
분실(폐기·열거)제각/일시			
분실(폐기·열거)장소			
폐 기 일 시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유무역지역외지점통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실(폐기·열거) 하였기에(하자가) 신고합니다. 2000. 위 신고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위일장 3부(화주와 신고자가 다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신청번호		일시반출 및 기간연장승인(신청)서				제외기간 특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반출기간			반출목적				
연장기간			반출장소				
연장사유			제반입일				
일 시 반 출 승 인 내 역				제 반 입 내 역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자유무역지역외지점통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통관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장지물품에 대한 일시 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2000. 위 신청인 세 관 장 귀 하				자유무역지역외지점통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통관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장지물품에 대한 일시 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2000. 위 신청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 서식>

폐기·열거 결과 보고서							
화 주	상호/성명						
	주 소						
폐기·열거방법			폐기·열거장소				
폐기 일시	상호/성명						
	주 소						
폐기·열거물품 내역							
내 국분	포장출력/기호 번호	품명·규격	수량/중량	가 격	폐기일시		
폐기·열거장소 내역(장소물품이 있는 경우)							
품 명	규 격	수량/중량	가 격	비 고			
자유무역지역외지점통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열거를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00. 위 보고인 세 관 장 귀 하							
붙임: 사진 1매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및 물품관리에 관한 통합고시」 별첨 서식

개선 방향에 따른 관련법 개선(안)은 다음 <표 5-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은 첫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자격)에 1차 및 2차 관세행정개선 대상 품목을 포함시켜 법률상 입주가 가능함을 명시한다. 둘째, 입주허용 불가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제1항, 제3항에 추가하였다. 셋째, 타당하다고 인정된 비즈니스모델별 원재료의 손모을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제1항 기록사항에 추가하여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손모을 범위에 속할 경우, 동법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 관리 상황의 조사) 제4항의 관세징수 예외 조항으로 포함하였다.

<표 5-3> 법·제도 개선(안)

해당 법률	기존	개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8. 국가기관	〈추가〉 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1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할 경우 사업을 영위할 것 가.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수정 및 추가〉 1. 「관세법」 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에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

해당 법률	기존	개선(안)
	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하기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반출은 관리하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관세법」 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외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할 경우 가. 제조·가공 후 국내반입(수입)하는 경우 3.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의 별표 3 수입제한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종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손모을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 관리 상황의 조사)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외국물품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멸실된 경우 또는 제38조제1항의 기록된 손모을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1.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절차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5-4>와 같이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을 제안하였으며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항만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축산물 제조기업의 경우 계획 중인 비즈니스 모델별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 실험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정 조건하에서 산출물 대비 투입물의 중량 감소분에 대한 표준화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WTO상 국내 수입가능한 모든 농·축산물의 저장기간별, 부위별, 품종별 손모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제약이 따르므로 절차 ①과 같이 기업별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은 제안서 제출 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손모율 표준화 실험 결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1호에 따라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관세청이 직접 손모율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기업이 제출한 표준화 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증위원단을 구성한다. 무작위 추첨방식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검증위원단은 자체 연구 또는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6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제1항의 사업계획 평가착수 시기⁸⁰⁾를 조정하여 ③단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선정평가 요소로 ‘손모을 표준화’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배점을 높게 둘 필요가 있다.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8조(구성) 제3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회계·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를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모집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의 경우,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속하는 업종 평가에 대해서는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에 관세행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6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③ 관리기관은 사업 참여의향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해당 여부
2.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종 여부
3. 관할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의 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
4. 관할 항만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1종 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 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80)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6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1항에서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5. 제13조제3항에 정한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제18조(구성) ③ 관리기관은 1종 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회계·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입주기업 모집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단계에서는 평가위원들에게 기업이 제출한 손모율 표준화 자료와 관세청 검증위원단의 검증 결과를 모두 제공하고 손모율의 타당성, 조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④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최종 선정을 수행한다.

〈표 5-4〉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구분	절차	내용
입주 희망 기업	① Biz-model별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	• Biz-model별 주요 수입 원재료의 중량감소 추정을 위한 실험 설계 및 분석 • 모델별 원재료 손모율 표준화 제시
	② 제안서 제출	• 손모율 표준화 결과가 포함된 제안서를 항만공사에 제출
관세청, 제3의 전문기관	③ 손모율 표준화 검증	• 기업이 제출한 손모율 표준화의 적합성, 객관성 여부에 대한 검증 실시 • 관세청이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검증 기관/연구자 선정 • 검증위원단: 제3자(학교, 관련 연구기관 등)로 구성
항만공사, 심사위원 (관세행정 전문가 포함)	④ 심사·평가	• 입주기업 선정 시, 심사위원들에게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손모율 표준화 검증 결과 제공 • 농·축산물 제조업체 입주여부 심사 시, 손모율 표준화 부문에 대한 배점이 높음
	⑤ 입주기업 최종 선정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선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6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제1항의 사업계획 평가착수 시기를 기존 입주 신청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서 60일 등으로 개정하여 손모율 표준화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②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손모율 표준화 관련 항목을 선정평가 기준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 후 손모율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하여 정기적(예. 분기별) 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입주 선정 절차는 1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과 유사하다. 다만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의 경우 우리 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 계획이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간접 지원으로는 국산원재료 일부 사용, 기술 세미나(국내 농가 대상) 개최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⑤단계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세행정 전문가 및 농림축산 전문가를 포함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해당 항목을 관리지침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농가 보호 등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별표3의 경우 '사회적 가치실현(배점 20점)'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고용(12점), 환경(5점), 안전(3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5-5〉 입주기업 선정 절차(안) - 2차 관세행정 개선 대상 품목

구분	절차	내용
입주 희망 기업	① Biz-model별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 ② 우리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 계획	• Biz-model별 주요 수입 원재료의 손모율 표준화 • 우리농가에 대한 간접적 지원 계획
	↓	
	③ 제안서 제출	• 손모율 표준화 결과가 포함된 제안서를 항만공사에 제출
	↓	
관세청, 제3의 전문기관	④ 손모율 표준화 검증	• 기업이 제출한 손모율 표준화의 적합성, 객관성 여부에 대한 검증 실시 • 관세청이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검증 기관/연구자 선정 • 검증위원단: 제3자(학교, 관련 연구기관 등)로 구성
	↓	
항만공사, 심사위원 (관세청, 농림부 포함)	⑤ 심사·평가	• 입주기업 선정 시, 심사위원들에게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검증 결과 제공 • 농·축산물 제조업체 입주여부 심사 시, 손모율 표준화에 대한 배점이 높음 • 농·축산물 제조업체 입주여부 심사 시, '사회적 가치실현' 항목 등에 우리농가 간접지원 사항 등 추가
	↓	
	⑥ 입주기업 최종 선정	

자료: 저자 작성

제 6 장

정책제언

커피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은 크게 생산-유통(수출입)-가공(로스팅, 포장 등)-소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가치를 구성 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공(로스팅, 포장 등)이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Samper & Xiomara, 2017).⁸¹⁾⁸²⁾ 커피 산업 중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산업은 대부분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수입되는 커피의 98%는 가공되지 않은 생두의 형태이며 오직 2%만이 로스팅 되거나 인스턴트 형태로 가공되어 수입되고 있다.⁸³⁾ 또한 전 세계 커피 로스터 산업은 향후 5년간 (2019~2022년) 연평균 약 6.3% 성장할 것이며 미국 시장 기준 2017년 4억 7천만 달러에서 2023년 6억 8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⁸⁴⁾ 이는 Take it or Leaving it pricing으로 고통받는 커피 농가

81) Samper and Xiomara(2017).

82) 총 가치 중 생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 유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임.

83) <https://www.perfectdailygrind.com/2018/11/exploring-the-chinese-coffee-industry-from-roasters-to-consumers/> (검색일: 2019. 2. 8).

84) <https://www.decisiondatabases.com/ip/12959-coffee-roasters-industry-market>

(생산자)와는 대비되는 양상이다(Dowding).⁸⁵⁾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카카오 가공국으로서, 카카오빈을 수입하여 카카오 파우더, 버터, 초콜릿 등으로 가공 후 수출하고 있으며 이때 대부분의 물량이 암스테르담항을 통한다. 카카오빈 가공 규모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15%이며 가공품 수출규모는 2015년 기준 27억 9,000만 유로로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선진 국가에서는 값싼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 후 소비 또는 재수출하는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취지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제조·가공에 대한 관세행정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 이해관계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관세당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통관시스템 확대

본 연구에서는 관세행정 개선(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관세행정 개선(안) 초기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청의 단기적 인력·재정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산업이 활성화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농림축산물의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뿐 아니라 식품 공급체인(Food Supply Chain)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안정성, 품질관리 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port(2019.02.08. 검색)

85) Dowding(2017), p.6.

월마트(Walmart), 네슬레(Nestle) 등 글로벌 식품제조·유통 기업은 IB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식품공급체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다. IBM과 머스크(Maersk) 또한 전 세계 무역의 전자화(Global Trade Digitalization)를 위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은 전 산업부문 SCM에 있어 핵심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전자통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식품 공급체인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관세청의 예산 증액, 인력 확충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관세당국, 농·축산물 가공 품목의 손모율 표준화 연구 적극 장려 추진

본 연구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이 해외의 농·축산물을 반입하여 가공 후 해외 수출 및 국내 판매를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 기간 및 예산 등의 제약에 따라 커피, 돼지고기(후지)에 대한 손모율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상기 2가지 품목 이외에도 수입 후 가공·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농·축산물에 대한 손모율 표준화 기초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축산물에 대한 손모율 표준화 기초 연구는 우리 가공·무역·물류기업 등에게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다양한 관련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세청은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 농·축산물 가공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자 등이 사전적으로 손모을 표준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손모을 표준화 연구에 특화된 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품목별 손모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 기금 마련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및 가공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는 규정상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WTO에 의해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농림축산품목이기는 하지만 국내 반입 시 시장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을 인정하여 해당 기업이 사회적 가치(국산원재료 일부 사용, 기술 세니마 개최 등 우리농가 간접 지원 계획)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피해가 인정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피해보전직불, 시설보조비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우리농가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4. 해양수산부-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 반출입 관리 시스템 개선해야

현행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기관은 부산항만공사(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 여수·광양항만공사(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등 주로

항만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과 비교하여 광범위한 지역(일단의 토지)에 지정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운송차량의 전용 출입구(게이트)가 지정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당국은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등 가공 과정에서 손모 발생 품목의 고부가가치 가공 사업장의 입주 허가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것이다.

항만공사 등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은 농·축산물의 반입·반출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 운송차량의 반·출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의 출입구(게이트)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관세포탈 등 위반행위 가능성을 낮추고 사후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5. 관세당국-해양수산부-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추진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입 화물의 국내 반출입 과정에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게 하거나, 외국물품을 반입한 후 제조/가공 등 부가가치 활동 수행 이후 다시 외국에 재수출하는 중요한 경제활동 공간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바, 관련된 행정기관, 즉 관세청과 항만공사 등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은 입주기업 유치에만, 관세당국은 입주기업 제한에만 몰두한다면, 기업들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양 기관의 업무 특성을 상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당국-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상설 협의체 운영을 위해 상위, 하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위 협의체는 관세청(본부)-해양수산부, 하위 협의체는 각 지역 세관-관리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객관적 조정자 또는 참여자로서 지역별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관세청, 『대만의 통관제도』, 2003.

국세청, 『네덜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8.

김동엽, 『WTO 규범 하에서 관세환급 및 보세공장제도의 적정운영 방안』, 경희대학교, 2003.

김용태, 『보세공장 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세법인 화우, 2014.

김은수, 이성우, 길광수, 신수용, 조지성, 김가현, 공영덕, 김동환, 김엄지, 곽도연,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김종렬, 강엽석, 김지민, 임완규, 최종원, 남성찬, 박은정,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석유품질·유통 개선 방안 연구』, 한국석유관리원, 2014.

김태인, 『동아시아 주요국의 FTZ 화물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홍콩, 대만, 상해 FTZ 비교』, 통상정보연구, 8(4), 2006.

김형근, 김근섭, 전형모, 정경선,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2016.5

박재곤, 김영민, 조재한, 김영민, 『자유무역지역 관리체계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5.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세법연구센터,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태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통관제도-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손병석, 전일수, 송인석, 『국내 신선물류클러스터의 구축방안-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

- 송주미, 『자유무역지역 유형별 Biz Model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3.
- 송주미,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5.
- 암스테르담 무역관, 『네덜란드 투자인센티브 제도』, 2018.
- 오사카세관 감시부 보세총괄부문, 『보세지역제도』, 2016.
- 오사카세관 감시부 보세총괄부문, 『보세지역제도』, 2016.
- 유대준, 『커피 인사이드 COFFEE INSIDE : All About Coffee』, 서울 : 해밀, 2009.
- 유영한, 『태국 세관통관 주요 환경』, 주 태국 대사관, 2013.
- 이명호, 『췌!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서울: 청아BOOKS, 2010.
- 이언경, 최상희, 전형모, 이상혁, 『온·습도 민감화물 항만 유치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6.
- 이성우, 김세원, 김은미, 고재성, 『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허브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5.
- 정재호·강성훈, 『무역자유화 확대에 따른 관세율 체계 분석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한국농어촌공사, “대만 농업 현황”, 「세계농업 제175호」, 2018.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보고서』, 2017.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대만 김치 시장조사』, 2015.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태국의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산업』, 지구촌 리포트 44호, 2017.

〈국외 문헌〉

Dowding, Timothy J. "The Coffee Bean: A Value Chain and Sustainability Initiatives Analysis" Melissa Murphy, University of Connecticut, Stamford CT US A.", 2017

Global Info Research, Global Coffee Roasters Market by Manufacturers, Regions, Type and Application, Forecast to 2023, 2018

International Trade Center, Cocoa A guide to trade practice, 2001.

Jo, J., and Lusk, J.L. "Consumers' Food Values over Time and Across Countries", 2018

Loureiro, M. L., and Umberger, W. J. "Assessing consumer preferences for country-of-origin labeling." Journal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37.1 (2005): 49-63.

Lusk, J. L., and Briggeman, B. C. "Food valu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1(1), (2008): 184-196.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etherlands Investment News, Vol.39, 2010.

Samper, Luis F., and Xiomara F. Quiñones-Ruiz. "Towards a Balanced Sustainability Vision for the Coffee Industry." Resources 6, no. 2 (2017): 17.

World Bank, 「Duty and Tax Relief and Suspension Schemes for Improving Export Competitiveness: A Reference and Learning Toolkit」, 2006.

〈인터넷 자료〉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eiec.kdi.re.kr/skin_2016/common/epicdownload.jsp?num=83379&filenum=2)(검색일: 2018.12.8.)

- 대만관세청(<https://web.customs.gov.tw/Default.aspx>)(검색일: 2018.12.22.)
-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motie.go.kr/ftz/gunsan/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검색일: 2018.12.5.)
-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motie.go.kr/ftz/gimje/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검색일: 2018.12.5.)
- 산업통상자원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motie.go.kr/ftz/daebul/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검색일: 2018.12.5.)
-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motie.go.kr/ftz/donghae/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검색일: 2018.12.5.)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motie.go.kr/ftz/masan/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검색일: 2018.12.5.)
-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motie.go.kr/ftz/ulsan/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검색일: 2018.12.5.)
- 산업통상자원부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motie.go.kr/ftz/yulchon/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aboutFreeTradeArea.jsp>)(검색일: 2018.12.5.)
-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홈페이지(<http://www.city.uruma.lg.jp/sangyou/147/1976/2001/>)(검색일: 2019.1.17.)
- 오키나와지구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oki_nawa/12_freezone/index.html)(검색일: 2019. 1. 17.)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co_cnt/ko/majbus/logistic/frezon/frezon.do)(검색일: 2018.12.5.)

일본 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hozei/index.html>)(검색일: 2019. 1.17.)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8/201508180102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8/2015081801020.html)(검색일: 2019.1.17.)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th/list_strc_download.php?ini_menu=menu_interest_and_law_160421_04&ini_content=general_interest_160426_05_160810_01&show_search=1&order_by=co_priority&sort_type=1&lang=th&xleft_menu=menu_interest_and_law_160421_04_160810_01&lang=en&left_menu=menu_interest_and_law_160421_0)(검색일: 2018. 12. 25.)

CBS(<https://www.cbs.nl/en-gb/news/2016/51/dutch-chocolate-exports-spreading>)(검색일: 2019.1.17.)

Decision Database(<https://https://www.decisiondatabases.com>)(검색일: 2019. 2. 8).

EU Commission(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customs-procedures_en)(검색일: 2019.1.17.)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jsp?num=83379>)(검색일: 2018.12.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_tldx=243&dataIdx=147379)(검색일: 2019. 1. 17.)

Perfect daily grind(<https://www.perfectdailygrind.com>)(검색일: 2019. 2. 8).

Societe Generale(<https://import-export.societegenerale.fr/en/country/taiwan/regulations-customs>)(검색일: 2018.12.13.)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24779/trade-balance-of-agricultural-products-in-the-netherlands/>)(검색일: 2019.1.17.)

Taiwan International Port(<https://www.twport.com.tw/en/News.aspx?n=9C9076824CE61A04&sms=AB20696A04F7E563>)(검색일: 2018.12.24.)

Uruma City Official Web Site(<http://www.city.uruma.lg.jp/sangyou/147/1976/2001>)(검색일: 2019.1.17.)

〈인터뷰 자료〉

인천항 콜드프라자(2018.9.3., 대한민국 부산).

오키나와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추진(2018.12.16., 일본 오키나와).

한국커피협회 서천우 전문가(2018.11.30., 대한민국 부산).

〈법령 자료〉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642호)」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14호)」 제61조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14호)」 제78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별표8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9호)」 제3조(정의), 제12조(반입 대상 물품) 제3항 제8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원재료 소요량 관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9호)」 제3, 12, 13, 32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별표1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별표2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4호)」 별표3

「자유무역지역법」 제34조(역외작업)

「자유무역지역법 (대통령령 제15575호)」 제38조(재고 기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입주제한업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93호)」, 제18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제2호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 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현재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언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형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 동해 지명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방안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수출전략 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 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인 쇄 | 2019년 03월 29일 인쇄

발 행 | 2019년 03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공감 Tel : 070-4407-6252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